비교법제 연구 12-20-⑭-2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I)

멕시코

김 정 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⑭-2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Ⅱ)

- 멕시코 -

김 정 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Ⅱ)

- 멕시코 -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Ⅱ)

- Mexico -

연구자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Jung-Hyun

2012.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원자재 가격 급등

○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 경제와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

○ 2003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김

□ MAVINS는 세계 자원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최대 자원부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멕시코(Mexico)·호주(Australia)·베트남(Vietnam)·인도네시아(Indonesia)·나이지리아(Nigeria)·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6개국을 의미함.

□ 본 연구는 중남미의 자원부국인 멕시코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관련법제와 투자법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멕시코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수출시장 중 브라질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임. 또한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협력은 미미한 수준임.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의 대표적인 사례는 볼레오 프로젝트(BOLEO Project)임.

□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 멕시코의 헌법은 다른 국가의 헌법과 달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국가의 목적 규정은 원자재 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함. 국가의 소유권과 천연자원 이용의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멕시코의 광업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멕시코에서 석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면 금지되어 있음.

□ 멕시코의 투자 관련 법제

○ 1989년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개정함으로써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영역 외의 모든 생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

○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제한과 금지에서 개방으로 변화

○ 멕시코의 투자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Ⅲ. 기대효과

□ 멕시코의 원자재, 즉 광물 및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현황과 관련 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원자재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 멕시코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빈번함. 특히 에너지 관련 법제는 정부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심함. 따라서 원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음.

주제어 : MAVINS, 멕시코, 헌법, 광업법, 투자법, 원자재 개발 협력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High Korean dependence of energy on overseas and a spike in prices of raw material.

○ Korea would face an economic and industrial crisis if there's any constraints on supply of raw material based on its high dependence of energy on overseas

○ The spike in prices of raw material will directly affect supply of raw material after year 2013

□ MAVINS is comprised of resource-rich nations that represents ferocious battlefield of resources like Africa,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etc. and it stands for 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and Republic of South Africa.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resource and investment laws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Mexico in developing raw material s which is one of resource-rich country in Latin America.

Ⅱ. Major Contents

□ The trend of cooperation in developing raw materials with Mexico

○ Mexico is the second-largest export market after Brazil in Latin America. Also Korean companies is locally contributing to Mexican economy by their production activety.

○ Yet the cooperation in developing raw materials between Korea and Mexico is insignificant. BOLEO Project represents the status of development in developing raw materials between Korea and Mexico.

□ Mexican law related to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 Mexican constitution prescribes the raw materials in minutes details contrary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national purpose is very important that links to a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Because it prescribes government ownership and controls over exploit of natural resources.

○ Analysis on legal system and main contents of the mining law.

○ A total ban on investment of petroleum by foreigner

□ Mexican Laws Related with Investment

○ The investment of foreigners is 100% permitted except the aria where is banned by constitution or special law in 1989 by reforming Ley de Inversion Extranjera

○ The policy of investment by foreigner has been changed from restriction or prohibition to an open.

Ⅲ. Expected Effects

□ This can be basic information when developing Korean raw materials by closel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status and related laws of Mexico in mineral, petroleum and gas

□ In Mexico, the reform of law is frequent. Especially the law related energy is extremely changeable government by government. Therefore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system is essential to minimize a failure in developing raw materials.

Key Words : MAVINS, Mexico, Constitution, Mining Law, Investment Law, Cooperation for Raw Materials Development.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제 2 장 멕시코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19

제 1 절 멕시코 개황 ····· 19

Ⅰ. 국가개요 및 경제지표 ····· 19

Ⅱ. 한국과의 교역현황 ····· 21

제 2 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 26

Ⅰ. 개 관 ····· 26

Ⅱ. 주요 광물자원 ····· 28

Ⅲ. 석 유 ····· 36

Ⅳ. 천연가스 ····· 40

제 3 절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환경 ····· 43

Ⅰ.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 43

Ⅱ. 투자환경 ····· 44

Ⅲ. 투자 인센티브 ····· 45

제 4 절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 ····· 46
Ⅰ. 한국의 진출 현황 ····· 46
Ⅱ. 볼레오 프로젝트 ····· 48

제 3 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 51
제 1 절 개 관 ····· 51
제 2 절 멕시코 헌법의 원자재 관련 내용 ····· 52
Ⅰ. 헌법의 국가주의적 성격 ····· 52
Ⅱ. 국가소유권의 천명 ····· 52
Ⅲ. 천연자원 이용의 규제 ····· 53
Ⅳ. 소유권의 취득 자격 ····· 56

제 3 절 멕시코 광업법의 주요내용 ····· 57
Ⅰ. 광업법 개관 ····· 57
Ⅱ. 총 칙 ····· 60
Ⅲ. 국가의 광업권 ····· 67
Ⅳ. 권리규정 ····· 72
Ⅴ. 의무규정 ····· 74
Ⅵ. 권리의 취소 및 무효 ····· 75
Ⅶ. 각종 행정조치 ····· 77

제 4 절 멕시코의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 78
Ⅰ. 멕시코의 석유 규제체계 ····· 78
Ⅱ. 멕시코의 천연가스규제체계 ····· 80

제 5 절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의 주요내용 ····· 82
Ⅰ. 에너지규제위원회의 목적과 권한 ····· 82

Ⅱ.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조직 ····· 84

제 6 절 검 토 ····· 85

제 4 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 89

제 1 절 개 관 ····· 89

Ⅰ. 변천과정 ····· 89

Ⅱ. 멕시코 외국인 투자의 특징 ····· 91

제 2 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92

Ⅰ.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 92

Ⅱ. 총 칙 ····· 93

Ⅲ.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신탁개발 ····· 99

Ⅳ. 회 사 ····· 101

Ⅴ. 외국법인의 투자 ····· 102

Ⅵ. 중립투자 ····· 103

Ⅶ.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 103

Ⅷ. 국가외국인투자등록사무소 ····· 105

제 3 절 회사법의 주요내용 ····· 107

Ⅰ. 개 관 ····· 107

Ⅱ. 회사법의 구성 ····· 108

Ⅲ. 회사의 설립과 운영 ····· 109

Ⅳ. 회사의 해산과 청산 ····· 111

제 4 절 노동법의 주요내용 ····· 111

Ⅰ. 개 관 ····· 111

Ⅱ. 근로계약의 기간과 해지 ····· 112

Ⅲ. 미성년자와 여성의 근로 보호 ····· 114
Ⅳ. 휴가와 수당 ····· 115
Ⅴ. 임금과 최저임금 ····· 116
Ⅵ. 근로시간 ····· 116

제 5 절 검 토 ····· 117

제 5 장 결 론 ····· 119
제 1 절 멕시코 원자재개발의 필요성 ····· 119
제 2 절 법제상의 시사점 ····· 120
제 3 절 멕시코와의 원자재개발 협력 방향 ····· 123

참 고 문 헌 ····· 1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87년 이후 국내의 폐광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1]을 시행하였다. 이후 한국의 광업은 본격적으로 사양화 길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탐사하는 기술이 답보상태에 머물게 되었다.[2] 게다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광물·석유·가스 등 국제 광물가격이 급등하면서[3] 원자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었다.

한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현재 97% 수준이고,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은 대략 30여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광물자원은 철광석, 니켈, 알루미늄, 아연, 동, 우라늄 등인데, 이 자원의 대부분도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4] 이와 같은 높은 에너

1) 1987년 이후 폐광이 확대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이에 개입해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고 석탄산업법을 개정해 폐광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1989년부터 폐광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비경제 탄광의 정리와 경제성이 높은 탄광의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폐광지원사업을 수행했다.
2006년 6월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2008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명칭변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관련업무를 인계했다.

2) 허철호, "멕시코 중북부지역의 광물자원", 자원환경지질, 제42권 제1호, 2009, 85면.

3) 가격이 급등한 대표적인 경우인 석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가격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2003년 석유 평균가격은 $26.27/bbl(두바이기준, 이하 동일한 기준 적용)이었는데, 2004년 $33.64로 전년대비 26%상승, 2005년 $49.37로 전년 대비 47% 상승, 2006년 $61.55로 전년 대비 25% 상승, 2007년 $68.43로 전년 대비 약 11% 상승하는 등 동 기간동안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는 두바이기준에 따른 연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출처: 유가정보서비스 2000년대 유가변동추이 및 주요사건 http://www.opinet.co.kr/oilknow.do?cmd=oilknow.sense.view&seqno=198&curPage=1&disPage=10&searchType=&searchText=&searchVolumnm=A002 최종접속: 2012.8.1.

4) 이민룡, "자원수급의 지정학과 한국의 자원외교", 정세와 정책, 2008, 3월호, 10면.

지 해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 경제와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외교를 강화함으로써[5] 각종 원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6]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MAVINS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MAVINS는 세계 자원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최대 자원부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멕시코(Mexico)・호주(Australia)・베트남(Vietnam)・인도네시아(Indonesia)・나이지리아(Nigeria)・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6개국을 의미한다.[7] 이들 6개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높은 인구 증가율[8]・소비시장 성장 가능성・풍부한 천연자원[9]이 강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

5) 최근 들어 정부의 자원외교의 성과 및 실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멕시코의 원자재개발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외교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는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6) 이러한 자원외교와 별개로 국내자원사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세계 주요 광물은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의 불안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부존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해외개발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한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

7) 2010년 1월 경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 <Business Insider>가 6개국을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신흥 경제국으로 지목하였다. MAVINS는 6개 국가의 앞 글자를 딴 용어이다.

8) 유엔 인구국에 따르면 마빈스의 인구는 2009년 기준 6억 6,000명으로 추정되는데, 2030년까지 8억 1,000만 명(22.3% 증가), 2050년까지 9억 300만 명(36.4% 증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브릭스(2030년 3.4%, 2050년 20.3%)와 G7 즉 선진 7개국(2030년 7.4%, 2050년 9.9%)의 인구 증가율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즉,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브릭스 역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등으로 인구 성장이 주춤한 반면 마빈스의 경우 폭발적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색인어: 마빈스)

9) 전세계 매장량 기준 니켈 46.3%, 우라늄 30.7%, 아연 26.3%, 구리 20.7%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 기준으로는 니켈 26.3%, 철광석 18.2%, 석탄 15.2%, 구리 12.1%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색인어: 마빈스)

한국은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원 확보를 위한 활로 개척의 다변화가 필요하고,[10] 이를 위해 자원부국의 원자재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MAVINS 국가 중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 원자재의 현황과 원자재개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멕시코의 원자재개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이 연구목적의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법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멕시코의 개황 및 원자재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한국과의 경제교역・멕시코의 원자재 현황・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환경 및 현재 한국이 멕시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재 개발 사업의 실태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제3장은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멕시코의 헌법은 다른 국가의 헌법과 달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의 목적에 관한 헌법규정은 원자재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현재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개발은 주로 광업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에서는 석유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재개발법제는 광업법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되,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련한 법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

10) 외교통상부/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자원개발의 이해」, 에너지 협력외교 자료집, 2008, 133면에 따르면 한국은 석유수입의존도가 100%이고 이 가운데 중동의존도가 81%에 육박하고 있다. 자원확보처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제4장은 멕시코의 투자 법제 및 정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원자재개발은 외국인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법 등 투자 관련 법제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본 연구의 시사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멕시코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멕시코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11)]

11) <워크숍 개최 내용>

주제: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및 투자법 현황	
일시: 2012.8.1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발표주제	발표자
멕시코의 일반투자현황과 투자법의 발전과 한계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멕시코의 투자환경과 자원시장 현황	안성희 (KOTRA 글로벌 정보본부 신흥시장팀 과장)

제 2 장 멕시코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 1 절 멕시코 개황

Ⅰ. 국가개요 및 경제지표

멕시코의 국토는 1,964,375 ㎢로 세계 15위의 규모이다. 한반도의 9배이고, 남한의 약 2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뉘어서, 저지대는 고온 다습한 기후이고, 고지대의 기후는 온난 건조이다. 기후는 고도에 따라 분포가 상이하다. 열대기후권이 전국토의 25%, 건조기후권이 50%, 온대기후권이 25%를 차지한다. 중부 고산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온대성 기후이며 나머지 국토는 아열대 기후이다.[12] 멕시코가 열대기후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멕시코의 주요 도시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온난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중심부는 상춘지역이며, 특히 1,500m 내외가 최적 온지대를 이룬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경우 멕시코고원 중앙부의 해발고도 2,240m에 있는 고지도시이다. 월평균기온은 최고인 5월에도 17.4℃, 최저인 1월은 12.1℃, 연평균기온은 15.1℃이다. 열대 기후에 속해 있지만,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덕분에 멕시코의 고지대는 역사적으로 집단거주지역으로 기능해 왔다.[13] 멕시코를 기후 때문에 생활과 투자가 어려운 지역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멕시코의 인구는 약 114,975,406명[14](CIA 기준)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GDP는 1조2078억$(2012년 IMF 기준)로

12) 출처: 두산백과사전, 색인어: 멕시코의 자연
13) 출처: 두산백과사전, 색인어: 멕시코시티
14) The World Factbook 2012년 7월 기준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x.html 최종접속 2012.9.1

세계 14위의 규모이다. 인구의 약 85%가 가톨릭신자이다. 여타의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1821년 9월 16일)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스페인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종은 혼혈(MESTIZO) 60%, 원주민(INDIJENA) 30%, 백인 9%, 기타 1%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의 정치체제는 다당제에 기반한 대통령제이다. 제도혁명당(PRI)은 60년 가까이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을 독점함으로써 일당절대우위체제를 구축했었다. 그러나 2000년 국민행동당(PAN)이 Fox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했었다. 이후 2012년 7월 1일 제도혁명당의 Nieto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15] 제도혁명당의 시대가 12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주기적으로 선거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에 따라 권력의 수평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적 정치체제를 구축한 국가라고 평가할 만하다.[16]

멕시코의 1인당 GDP는 17,979$(2002년 전망치)로 2만 달러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편이고,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17] 2009년 실질경제성장률은 -6.3%였지만,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어 2012년에는 3.7%가 성장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4년 동안 3~4%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각종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OECD는 멕시코 경제가 2012년 3.5%, 2013년에는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8] 그 외 멕시코의 경제지표에 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15) Nieto 대통령은 2012년 12월 1일 취임예정이다.

16) 멕시코 정치의 안정성과 민주적 성숙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도 다양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멕시코 정치에 대한 분석이 주요연구목적이 아니므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따라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에 근거해 멕시코 정치를 민주적 정치체제라고 평가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17) 골드만삭스는 2010년 12월 투자보고서를 통해 2011년 경제 성장 가능성이 큰 성장 국가군(Growth Economies)으로 믹트(MIKT)를 제시했는데,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터키(Turkey) 4개국이 해당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로 함께 묶였었다.

18) OECD http://www.oecd.org/mexico/mexico-economicforecastsummarymay2012.htm 최종

<표 1> 멕시코의 경제지표[19)]

구 분		단 위	2009	2010	2011	2012*
GDP(명목)		U$억	8,818	10,354	11,548	11,530
1인당GDP(PPP)		USD	15,035	16,323	17,126	17,979
실질 경제성장률		%	-6.3	5.5	4.0	3.7
물가상승률		%	3.6	4.4	3.8	3.3
실 업 률		%	5.5	5.4	5.2	4.5
금리		%	5.9	4.9	4.8	4.3
교역	수출	U$백만	229,704	298,473	349,676	390,101
	수입		234,385	301,482	350,842	393,460
	무역수지		-4,681	-3,009	-1,167	-3,359
경상수지			-5,116	-3,094	-8,789	-12,512
외국인 직접투자			27,140	16,119	20,709	19,554
외환 보유고			99,858	120,543	149,336	147,315
외 채			171,485	200,081	211,147	220,035
연말환율(USD1)		페소	13.06	12.36	13.99	13.68

* 2012년 수치는 전망치

Ⅱ. 한국과의 교역현황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1967년 5만5천 달러에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91억 달러로 16만 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에도 78

접속 2012.9.30.

19) 자료원은 멕시코경제부(EIU), 안성희, "멕시코 투자 환경과 자원시장 현황",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8, 27면에서 재인용.

만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2,800배 증가했다.[20] 1962년 한국과 멕시코가 최초로 수교를 맺은 이후 2012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교역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멕시코 2011년 교역 기준으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2위(97억 달러), 무역흑자 6위(74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이다.[21]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1988년까지 한국이 무역적자국이었지만, 이후 무역흑자국이 될 수 있었다.[22] 특히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여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29.5%)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이며 무역흑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중남미에서 최대의 무역흑자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이다.[23]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던 2009년을 제외하고,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24] 한국의 對멕시코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다. 한국의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25]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의 경우 1~2.5%이고, 수입의 경우에는 0.18~0.45%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무역

20) 문병기/장민주,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멕시코의 중요성과 유망 진출분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 3면.
21) 안성희, 앞의 글, 36면.
22) 문병기/장민주, 앞의 글, 3면.
23) 안성희, 앞의 글, 36면.
24) 문병기/장민주, 앞의 글, 4면.
25) 안성희, 앞의 글, 36면.

수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전체 무역흑자에서 對멕시코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45%선이기 때문에 멕시코 무역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26)]

한편, 2012년 들어서면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1년 대우조선해양의 시추선인도로 단발성 수출이 급증했었다.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인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수요가 부진함과 아울러 공급과잉으로 인해 단가가 하락함으로써 2012년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27)]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에 수입증가율이 50%를 웃돌았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수입증가율이 9월 말 기준으로 10.8%이기 때문에 전체 무역수지는 예전을 약간 밑도는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對 멕시코 수출입 실적[28)]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01	2,149	10.1	267	-29.4	1,882
2002	2,231	3.8	295	10.8	1,935
2003	2,455	10.09	334	13.0	2,121
2004	2,994	22.0	411	23.2	2,583
2005	3,789	26.6	460	11.8	3,329
2006	6,285	65.9	798	73.5	5,486
2007	7,482	19.1	1,013	26.9	6,469

26) 문병기/장민주, 앞의 글, 4면.
27) 안성희, 앞의 글, 36면.
28) 자료원은 KITA http://www.kita.net/ 최종접속 2012.9.30.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이다.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08	9,090	21.5	1,049	3.6	8,041
2009	7,132	-21.5	971	-7.4	6,160
2010	8,846	24.0	1,521	56.5	7,325
2011	9,729	10.0	2,316	52.3	7,413
2012.09	6,771	-10.8	1,997	10.8	4,774

멕시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자면, 수출 분야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자동차, 칼라 TV 등이 주요 품목이다. 반면에 수입 분야에서는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대 수입품목 중 6개가 원자재이다. 게다가 그 증가율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 기타금속광물의 수입증가율은 223.4%에 이르렀다. 그만큼 한국이 멕시코 원자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對 멕시코 10대 수출품목 및 비중[29)]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1		2012.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MTI	총계	9,729	10.0	3,677	-18.1
1	8361	평판디스플레이	2,496	-20.9	965	-18.6
2	7411	승용차	614	36.8	335	89.5

29) http://www.kita.net/ 최종접속 2012.5.30.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이다.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1		2012.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3	7420	자동차부품	699	36.1	308	15.2
4	8211	칼라TV	987	3.5	227	-44.7
5	6133	냉연강판	425	35.7	179	9.9
6	2140	합성수지	332	29.2	168	22.3
7	6134	아연도강판	351	6.1	134	-11.3
8	6131	중후판	27	789.3	84	3,307.70
9	6132	열연강판	85	-11.1	62	111.6
10	7112	펌프	101	11.7	55	20.7

<표 4> 對 멕시코 10대 수입품목 및 비중[30)]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1		2012.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MTI	총계	2,316	52.3	1,050	8.7
1	1190	기타금속광물	280	223.4	319	185
2	1160	아연광	253	40.3	120	29.7
3	6184	고철	80	24.8	60	91.5

30) http://www.kita.net/ 최종접속 2012.5.30.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이다.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1		2012.5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4	7420	자동차부품	74	51.1	46	67.8
5	6221	동괴및스크랩	140	321.2	42	-63.3
6	1130	동광	67	16.8	29	1,788.70
7	8147	의료용전자기기	45	70.4	23	6.9
8	7411	승용차	50	139.5	23	-3.4
9	1112	은	6	-48.9	22	382.2
10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62	-36.2	21	-27.9

제 2 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Ⅰ. 개 관

멕시코 원자재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먼저, 석유를 보자면 매장량은 세계 18위이고 중남미에서는 3위이지만, 생산량은 세계 7위이고 중남미에서 가장 많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매장량은 세계 33위이고 중남미에서는 2위이며, 생산량은 세계 17위이고 중남미 1위이다. 그 외 다양한 광물의 경우에도 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10위 안팎에 오르내릴 정도이고 중남미에서는 수위를 다툴 정도로 멕시코는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멕시코 원자재의 매장량과 생산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멕시코 자원 현황[31)]

광 물 (단위)	매장량	세계 비중 (%)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생산량 (e)	세계 비중 (%)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석 유 (천배럴)	11,400,000	0.8	18	3	2,958	3.7	7	1
천연가스 (십억m^3)	500	0.3	33	2	55.3	1.9	17	1
석 탄 (백만톤)	1,211	0.1	23	3	4.5	0.2	24	2
금 (톤)	1,400	2.7	12	4	60	2.4	13	2
동 (백만톤)	38	6.2	5	3	0.2	1.2	13	3
망 간 (백만톤)	4	0.6	8	2	0.2	1.5	9	2
몰리브덴 (천톤)	130	1.3	9	3	8	3.4	6	3
아 연 (백만톤)	15	6.0	6	2	0.5	4.2	8	2
은 (천톤)	37	7.3	7	3	3.5	15.8	2	2

31) 석유・천연가스・석탄은 British Petroleum,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British Petroleum, 2011. 순위 참조.
그 외 금・동・망간・몰리브덴・아연・은・창연・철광석・카드뮴은 U.S. Department/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USGS, 2011. 참조.

광 물 (단위)	매장량	세계 비중 (%)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생산량 (e)	세계 비중 (%)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창 연 (톤)	10,000	3.1	4	2	1,000	13.2	3	1
철광석 (백만톤)	700	0.4	16	3	12	0.5	15	3
카드뮴 (천톤)	48	7.3	6	1	1.3	5.9	7	1

Ⅱ. 주요 광물자원

1. 멕시코 광업의 현황과 특징

멕시코 광업은 석유, 관광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생산분야이다. 광업부문의 외화획득액은 관광 부문의 85%에 이르고, 석유 판매부문의 44% 정도이다.[32] 이러한 광업은 2011년 기준으로 국가전체 GDP의 4.9%를 차지하는 주요전략 산업이다. 총 광물생산액은 17,172백만 달러이고, 은 26%, 금 24%, 구리 21%, 아연 7%, 기타광종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재 시장가격의 변동이 잦다보니 안정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다른 자원부국들과 달리 멕시코의 광업은 경쟁력이 부족하여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정・노동 정책 등에 있어서 구조적 개혁이 부족한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이 있다.[33]

32) 멕시코 광업협회, “2009년 멕시코 광업현황”, 주멕시코 대사관, 2010, 1면.
33) 앞의 글, 2면.

한편, 의회의 무관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멕시코에서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달리 광업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의회가 광업에 대하여 세금과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34)]

또한 광업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노동시장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다. 멕시코 최고의 구리 광산이며 매장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Cananea 광산의 불법 파업은 사법당국의 개입이 없이 32개월이나 지속되었던 적이 있다.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멕시코의 광산에서 이뤄진 불법 파업은 32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2009년 멕시코 사회보장공단(IMSS)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수치 발표에 따르면 광업분야에서는 4,000명의 고용인원이 사라져 2008년 273,000명에서 2009년에는 269,000명으로 근로자가 감소했다.[35)]

그리고 광물 채굴 및 광산 탐사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갖고는 있지만, 국내 및 국제 환경 규제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치주의의 미확립이 광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 특유의 조직 범죄는 광업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36)]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로 인해 Metals Economics Group사에서 발표한 ‘World Exploration Trends 2010’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멕시코는 광업탐사 부문 투자유치는 세계 4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투자유치 금액에 있어서는 2008년 7억5천6백만 달러에서 2009년 3억6천6백만 달러로 52%나 감소했다.[37)]

---

34) 앞의 글, 2면.
35) 앞의 글, 2-3면.
36) 앞의 글, 3면.
37) Metal Economic Group, *World Exploration Trends 2010*, Metal Economic Group, 2010, p. 6.

2. 주요 광물자원 현황

이와 같은 멕시코 광업의 불확실성과 별개로, 멕시코 광업은 전 세계 생산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 창연, 형석은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천청석은 3위, 비소, 규회석은 4위, 흑연, 카드뮴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6> 멕시코 주요 광물 세계시장 점유율[38)]

순 위	광 종	세계시장 점유율
2	은	14.0%
2	창연	18.7%
2	형석	17.2%
3	천청석	23.0%
4	비소	3.0%
4	규회석	5.0%
5	흑연	1.2%
5	카드뮴	9.0%
6	납	4.0%
6	중정석	4.0%
6	몰리브덴	3.0%

38) 멕시코경제부 (Secretaría Economía)

순 위	광 종	세계시장 점유율
7	석고	5.0%
7	아연	4.0%
8	소금	5.0%
8	망간	1.0%
8	규조토	3.0%
10	장석	3.0%
12	구리	3.0%

3. 광물자원 부문별 생산 현황

(1) 광 물

멕시코 광업에서는 구리가 전체 생산량의 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은이 1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까지 멕시코는 3,093,336Kg의 은을 생산하여 세계 제1의 은 생산국이었으나 2005년 페루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 귀금속

귀금속 분야에서는 금, 아연, 납의 생산량이 가장 두드러진다. 금은 2004년 24,496Kg에서 2005년 31,555Kg로 28.8%가 증가하였고, 아연은 384,338톤에서 418,356톤으로 8.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납은 141,578톤에서 156,722톤으로 10.7%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5년 금 생산량은 멕시코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2009년 금을 2.2백만 온스(62.4톤)를 생산하여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하였다.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23%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12위를 기록하였고,[39] 중남미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40]

멕시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선광 후 금 생산량이 2009년에는 51.4톤으로 '08년에 비해 2%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21,712백만 페소로 전년에 비해 38% 상승한 기록이고, 달러로 계산한 생산액은 1,599백만 달러로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14% 상승한 가격이었다.[41]

대표적인 금 채굴 기업은 Goldcorp Mexico로 "Los Filos", "El Sauza", "San Dimas", "Peñasquito" 등 4개 광산에서 총 646천 온스의 금을 생산, 전체의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2]

멕시코 은 생산량은 3,554톤으로 증가하여 기존 생산 기록을 갱신하였다.[43]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선광후 은 생산량이 2,693톤으로 2008년에 비해 24%가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2% 증가하여 1,276백만 달러였다.[44]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은 광산인 Fresnillo 광산은 Zacatecas주에 위치해 있으며 가채기간은 약 12.8년이다. 이 광산에서 2009년에 1,178.8톤의 은을 채굴하였으며 멕시코 국내 은 채굴의 36%를 차지하였다.[45]

---

39) 세계 금 생산은 75.5백만 온스(2,350톤)이며, 생산비중은 중국 12.8%, 호주 9.3%, 미국 8.9%, 남아공 8.9%, 러시아 7.9%, 페루 7.6%, 기타 12.8%이다.

40) Metals Economics Group 통계에 의하며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칠레 다음 제2위 금 매장량 보유국가로 분류된다.

41) 금의 국제가격은 2008년 평균 871.96 달러/온스였으나 '09년은 11.5% 상승한 972.35 달러/온스였다.

42) 멕시코 광업협회, "2009년 멕시코 광업현황", 주멕시코 대사관, 2010, 5면.

43) 세계 은 생산은 페루 17.3%, 멕시코 15.1%, 중국 13.9%, 칠레 9.3%, 호주 8.3%, 기타 35.6%이다.

44) 2009년 은 평균가는 2008년과 비교하여 2% 정도가 하락하여온스 당 14.98달러에서 14.67달러로 하락하였다.

45) 멕시코 광업협회, "2009년 멕시코 광업현황", 주멕시코 대사관, 2010, 6면.

(3) 비철금속

현재 구리 최대 생산 국가는 칠레, 2위는 페루, 3위는 미국이다. 멕시코 구리 생산은 1987년 이래 22년째 낮은 생산율을 보이고 있다. 선광 후 구리 생산은 2009년에 15% 감소한 227,750톤을 기록하였고, 생산액은 15,727백만 페소(1,15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6% 감소한 수치였다. 구리 최대 생산사는 Grupo Mexico이고, La Caridad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아연 최대 생산 국가는 중국(25%), 2위는 페루(13%), 3위는 호주이고, 멕시코는 7번째 최대 생산 국가이다. 채굴량은 489천톤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선광후 아연 생산량은 2008년 397천톤에서 2009년 391천톤으로 3.2% 하락하였으며, 생산액은 8,562백만 페소라고 한다. 최대 아연 생산 광산은 Grupo Mexico의 Charcas 광산이며 2,3위는 Industrias Penoles사의 Bismark, Fco. I. Madero 광산이다.[46)]

현재 납 최대 생산 국가는 중국(41.0%), 2위는 호주(12.0%), 3위는 미국(9.3%), 4위 페루(7.1%), 5위 멕시코(3.6%) 볼리비아(2.3%), 캐나다(2.2%), 인도(2.1%) 순이다. 멕시코 납 생산량은 2009년 기준으로 143,838톤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한 양이고, 최대 납 생산 광산은 Industrias Penoles의 Naica 광산이다.[47)]

몰리브덴의 2009년 생산량은 30% 증가하여 10,167톤('08년 7,812톤)을 기록하였으며, 생산액은 242백만 달러였다.최대 몰리브덴광산은 Mexicana de Cobre의 La Caridad 광산이다. 창연 생산량은 2009년 854톤으로, 전년대비 25%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Peñoles 정제소의 2009년 초 파업에 따른 결과이다.

---

46) 앞의 글, 7면.
47) 앞의 글, 7면.

(4) 제철용 광물

세계 전체 철 생산량은 1,219.7톤이며, 100개국 이상 약 2천개 기업이 철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 20개 주요 생산 기업 및 국가가 세계 생산량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철광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양은 1,329백만 톤이고, 그 중 42%는 Grupo Acerero de Norte(GAN)사, 24.3%는 Arcelor Mittal사, Peña Colorada사가 18.8%, Ternium사가 14.7%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광산회사 이외에도 중소기업도 존재한다. 가장 규모가 큰 광산은 Coahuila주의 Hercules광산, Colima주의 Peña Colorada광산, Michoacan주의 El Volcan광산 등이 있다.

멕시코는 세계 15위 정도의 철광 생산국이다.[48] 2009년에 11,680천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였다. 2010년에는 Michoacan주 Jalisco와 Aquila 사이에 위치한 Pihuamo 지역의 El Encino광산 탐사 및 개발 투자액이 5300만불에 이르렀다고 한다.

멕시코 광업협회(Camimex)가 발표한 철광 생산량은 2009년에 12.06백만 톤으로 2008년 14.39백만 톤에 대비하였을 때 16%가 감소한 양이다. 또한 선광후 철광 생산량은 7.07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8% 감소하였고, 생산액은 36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5%나 하락하였다.[49]

현재 석탄 최대 생산국가는 중국(41%), 2위는 미국(16%), 3위는 인도(7.5%), 4위는 호주(5%)이다. 멕시코내 석탄 확인매장량은 2008년에 비해 5.1%가 증가하였으나 석탄(코크스 제조용 제외) 생산량은 전년대비 9% 감소하여 9.5백만 톤, 생산액은 359백만 달러였다. 한편, 광업협회소속 제철금속 생산기업협회측은 2009년 총 석탄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12.9백만 톤을 생산했다고 발표하였다.

48) 2009년 세계 14위, 2008년 세계 15위이다.
49) 멕시코 광업협회, “2009년 멕시코 광업현황”, 주멕시코 대사관, 2010, 8면.

2009년 망간원석(Carbonato, nodulo)의 생산은 전년보다 각각 29%, 13%가 감소하여 475천톤과 264천톤을 생산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철강합금의 생산이 감소하여 2009년 127천톤을 생산하였다. 망간 정광 생산은 118,578톤으로 전년대비 30% 줄었으며, 생산액 또한 2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다.

2009년 멕시코는 14.2백만 톤을 생산하며 생산국 14위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철강생산업체별로 보면, Ternium이 유일하게 2.1% 성장한 3,038천톤, AHMSA 2,990천톤, Arcelor Mittal 2,867천톤, Deacero 2,038천톤, Tamsa 701천톤을 생산하였다.

(5) 비금속 광물

멕시코 통계청 자료에서는 2009년 비금속성 광물생산이 9,342백만 페소로 멕시코 총 광업생산액 94,817백만 페소의 10%를 차지하였으나, 전년대비 10.5%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생산현황과는 달리, 11개 광물의 생산액은 증가한 바, 주요 광물의 생산증가율은 중정석 47%, 형석 27%, 규조토 12%, 석고 29%, 인 146%, 천정석 47%, 소금 43%, 황산나트륨 24%였다.[50]

2009년 생산액 비중으로 볼 때, 소금(22.6%), 형석(21.9%), 규조토(13.8%), 인(13.4%), 황산나트륨(9.5%), 석고(6.6%), 중정석(2.5%), 기타(9.7%) 순이었다.

유황 생산량은 2008년 1.04백만 톤에서 7% 증가하여 2009년 1.11백만 톤을 기록하였고, 2009년 중정석 생산량은 151,791톤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8%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47% 상승하여 230백만 페소에 달하였고, 중정석은 Nuevo Leon주에서 78%, Coahuila주에서 20%가 생산되었다.

형석 원광 생산량은 2009년 672천톤을 기록하였고, 형석 정광 생산량은 381천 톤이었다.

---

50) 앞의 글, 9면.

멕시코 광업협회 비금속 생산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멕시코 규조토 생산규모는 2.7백만 톤(2008년 2.5백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석고 생산량은 5.7백만 톤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12%가 증가한 양이었고, 생산액은 617백만 페소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최대 생산사는 Compania Occidental Mexicana였다. 2009년 인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 47%나 증가하여 1.4백만 톤에 달하였고, 생산액은 146% 이상 증가하여 1,252백만 페소였다. 천청석은 2009년에 36,127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22% 증가한 수치였다. 생산액은 47% 상승하여 22.4백만 페소를 기록하였다. 멕시코 장석 생산은 22% 감소, 347,510톤으로 생산액은 176백만 페소로, 전년과 비교하여 3% 증가했다. 최대 생산사는 Grupo Materias Primas사였다.[51]

소금은 2009년 전년대비 15% 감소한 7.4백만 톤을 생산하고, 생산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2,114백만 페소를 기록하였고, 최대 생산사는 Baja California Sur주의 Guerrero Negro사였다. 황산나트륨은 멕시코에서는 Coahuila주(Quimica del Rey사)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606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2009년 황화마그네슘 생산량은 34,700톤으로, 2008년에 비해 18% 감소한 양이었고, 최대 생산사는 Qumica del Rey사였다.[52]

Ⅲ. 석 유

중남미지역은 중동지역 다음으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고, 멕시코는 중남미국가 중에서 석유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제17위의 석유 매장량(확인매장량: 2011년 기준 104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53] 일일 생산량은 약 371만 배럴로 세

51) 앞의 글, 10면.
52) 앞의 글, 11면.
53) CIA의 The World Factbook

계 7대 석유 생산국이다. 이 가운데 140만 배럴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는 3가지 품질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질유인 API[54] 22°의 Maya 원유가 있으며 현재 멕시코 총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저유황 경질원유인 Isthmus 원유는 API가 34°로 멕시코 총 생산물량의 3분의 1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이 생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경질 원유인 Olmeca 원유는 API가 39°로 멕시코 원유 총 생산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 생산되고 있다.

멕시코 석유 생산량의 약 75% 가량은 멕시코만의 Campeche 분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신규 유전탐사보다는 기존 유전의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55]

석유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이 아니면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국제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56]

멕시코는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준공공기관인 멕시코석유공사(PEMEX)가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PEMEX는 국가 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원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유전지역의 개발 및 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57]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x.html 최종접속, 2012.9.1.

54)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란 미국석유협회 및 그 규격의 약칭으로, 국제적으로 원유의 비중은 API 비중이 사용되고 있다.

55) 외교통상부 중남미지역협력과, "중남미 자원현황", 외교통상부 2008, 34면.

56) 앞의 글, 35면.

57)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10~2025년 멕시코 석유시장 전망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75면.

멕시코 총 매장량[58]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는, 북동 및 남서 해양 지역의 유전들로의 집중이 18,108.0 mmbpce로 총 매장량의 42.1%에 달하고, 그 중 북동 해양지역이 12,097.2 mmbpce (28.1%), 남서 해양지역이 6,010.8 mmbpce (14.0%)를 차지하고 있다. 북부와 남부 지역은 총 매장량의 57.9%인 24,966.6 mmbpce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남부지역이 5,824.3 mmbpce (13.5%)ÀÇ 비중을 보였다.[59]

멕시코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송, 저장, 상업화하기 위한 탐사·생산 및 필수적인 인프라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멕시코석유공사 탐사·생산사업부(PEP)는 최선의 관리와 개발을 위해 멕시코를 지리학적으로 북동해양지역,[60] 남서해양지역,[61] 북부지역,[62] 남부지역[63]의 4개

58)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76면에 의하면 확인매장량,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을 종합한 총 매장량을 3P라고 부른다. 확인매장량은 이미알려진유전들에서생산되는탄화수소를말하며, 현존하는 유정들에서 회수가 예상되는 개발매장량을 포함하여 현재의 인프라와 적정 수준의 투자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도 포함한다.

59)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77면.

60)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86~90면은 북동해양지역의 원유매장량과 가채년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동해양지역은 멕시코영토의 남동쪽에 위치한 Campeche, Yucatán, Quintana Roo 주들의 해안 앞 멕시코영해지역을 지칭한다. 이 지역에는 Cantarell 과 Ku-Maloob-Zaap의 두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북동해양지역은 총 매장량 2위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그 비중은 28.1%이다. 2009년 북동해양지역의 생산량은 586.2 mmbpce로 기록되었다. 가채년수(R/P)는 1P매장량에서 11.4년으로, 전년대비 1.7년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을 통합하는 2P매장량의 가채년수는 15.7년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2008년 대비 1.6년이 증가한 것이다.

61)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90~93면은 남서해양지역의 원유매장량과 가채년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서해양지역은 넓이가 352,390 평방킬로미터 이상으로 멕시코만의 대륙붕과 대륙사면이 속한 영해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Veracruz, Tabasco, Campeche 지역과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북동해양지역과 맞닿아 있으며, 북쪽과 서쪽으로는 멕시코 영해이다. 광범위한 넓이의 남서해양지역은 Abkatún-Pol-Chuc 통합행정센터와 Litoral de Tabasco 통합행정센터로 구성되어있다. 2010년 1월 1일 남서해양지역의 총 매장량은 6,010.8 mmbpce로, 국내 총 매장량의 14.0%이다. 형태별 비중은, 오일 59.1%, 콘덴세이트 1,2%, NGPL 11.2%, 동량의 건성가스 28.5% 로 조사되었다. 남서해양지역의 원유 총 매장량은 3,551.4 mmb이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이 지역은 멕시코 원유 확인매장량의 11.2%, 1,169.8 mmb로써 멕시코 국내 매장량의 3위 지역이다. 남서해양지역은 2009년 말 1P매장량의 가채년수가 7.0년으로 조사되었다.

62)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93~97면은 북부지역의 원유매장량과 가채년수에 대하여

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멕시코의 원유 생산은 2007년 이래로 Cantarell 유전의 쇠퇴를 원인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의 주요 중심지가 노후한 분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유전지역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Chicontepec 프로젝트에서도 그러하듯이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들이 지역적인 난해함으로 인해 고비용을 요구되기 때문에 원유 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64]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부지역은 약 1.8 백만 평방 킬로미터의 넓이로 멕시코 영토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며, 육지와 일부 해양지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위치는 멕시코 일부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미국과 인접한 북부지역, 남쪽으로는 Tesechoacán 강과 만나고, 동쪽으로는 멕시코만의 500미터의 등심선지역, 또한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만나는 방대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Burgos, Poza Rica-Altamira, Veracruz, Aceite Terciario del Golfo 등의 네 통합행정센터로 나뉜다. 북부지역은 19,142.4 mmbpce에 이르는 많은 양의 잔류매장량이 통합되어 국내 총 매장량의 44.4%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2010년 1월 1일 북부지역은 오일의 총 매장량이 12,083.1 mmb로 보고되어, 국내 매장량의 39.6%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지역이다. Paleocananl de Chicontepec 지역의 중요성은 추정매장량과 가능매장량으로 기대되는 총량에 있는데, 멕시코 국가적인 수준으로도 그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중기적으로는 가장 큰 개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고려된다. 북부지역은 멕시코의 원유 확인매장량의 5.9%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인 지역이다. 그러나, 추정매장량은 6,077.6 mmb로, 이는 국내 총 추정매장량의 60.7%로서 국내 1위의 추정매장량 보유 지역이다. 또한 원유 가능매장량은 5,392.0 mmb로, 멕시코 가능매장량의 53.6%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능매장량을 보유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북부지역의 원유 확인매장량에 해당하는 가채년수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6.3년이었다.

63)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97~100면은 남부지역의 원유매장량과 가채년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부지역은 대략 390,000 평방킬로미터의 넓이로, Chiapas, Campeche, Tabasco, Quintana Roo, Yucatán 과 Veracruz, Oaxaca, Guerrero 주들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멕시코의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멕시코만과 마주하고, 북동쪽으로는 위도 18도의 북부지역과 Tesechoacán 강과 만나며, 동쪽으로는 카리브해, 벨리세, 과테말라와 맞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태평양과 만난다. 행정적으로 이 지역은 탐사 지역행정센터(Activo Regional de Exploración)와 다섯 개의 통합행정센터들, 즉, Bellota-Jujo, Cinco Presidentes, Macuspana, Muspac, Samaria-Luna로 구성되어 있다. 남부지역 총 매장량은 5,824.3 mmbpce로, 국내 총 매장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매장량의 12.3%에 해당하여, 원유 부문 지역 3위를 차지했다.

64)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100면.

<그림 1> 멕시코의 지역별 원유 매장량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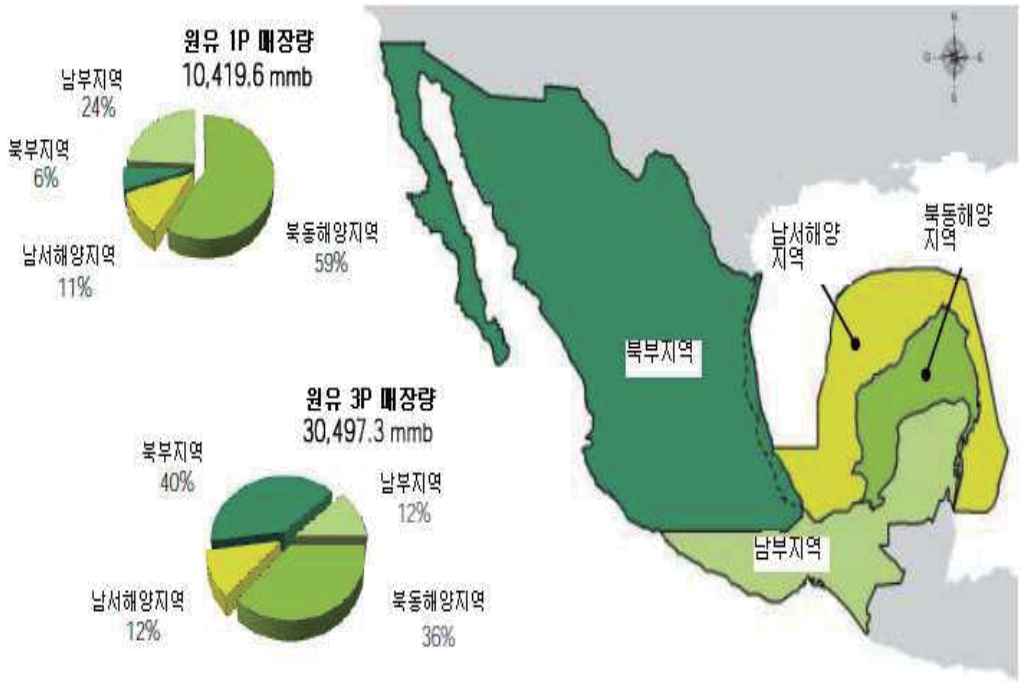

Ⅳ. 천연가스

멕시코 천연가스의 총 잔류 매장량은 2010년 1월 1일 기준 6만 1236.0mmmpc이다. 지역별 매장량을 보면 Norte지역에 57.7%, Suroeste 지역에 20.0%, Sur지역에 14.9%, Noreste 지역에 7.4%가 매장되어 있다.[66] 천연가스는 에너지부(SENER)에서 전담관리하며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서 판매, 수송, 유통, 세부 조건을 승인하고 공포하는 역할을 한다. PEMEX와 그 부속 기관들이 실행하는 직접판매(VPM)는 국가의 독점적인 활동인데, 이는 국내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실행하는 가스의 첫 번째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65)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86면.
66)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10~2025년 멕시코 천연가스시장 전망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92면.

현재 멕시코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는 대부분 석유제품 생산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소량의 가스를 순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스에 대해 수입관세를 지난 1999년에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가스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멕시코 경제발전에 힘입어 천연가스 수요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전력생산을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7]

1990년대 중반 멕시코 정부는 가스부문에 민간 참여를 일정부분 허용하였고, 국내에서 천연가스의 수송・유통・저장・수입・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Pemex는 가스의 탐사 및 개발과 국가산업전략활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용이해졌다.[68] 가스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영 석유회사인 Pemex사는 미국 국경근처까지 파이프라인 건설 등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천연가스 생산능력을 증대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 탐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Burgos 유전 및 Cantarell 유전에도 석유와 함께 대량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mex사는 이와 같은 가스전을 개발하여 향후 가스생산량을 현재보다 50% 이상 더 생산할 계획이다.[69]

멕시코의 천연가스시장은 <그림 2>과 같이 크게 5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2009년 경기침체는 지역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다. 북동(Noreste), 중부(Centro), 남-남동(Sur-Sureste) 지역에서는 천연가스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북서(Noroeste), 중-서(Centro-Occidente) 지역에서는 각각 경기침

67) 외교통상부 중남미지역협력과, “중남미 자원현황”, 외교통상부 2008, 35면.
68)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10~2025년 멕시코 천연가스시장 전망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105면.
69) 외교통상부 중남미지역협력과, 앞의 책, 35면.

체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에 타격을 입은 민간전력부문과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감소가 나타났다.[70]

<그림 2> 멕시코 천연가스시장의 지역별 분포[71]

천연가스의 공급은 크게 1) 탐사-개발, 2) 채취, 3) 처리, 4) 운송 및 유통 등의 4단계를 거친다. 탐사-개발의 경우, 2010년 1월 1일 현재 멕시코의 총잔여매장량은 61조 2360억 입방피트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북부(Norte) 지역이 57.7%, 남서해양(Marina Suroeste) 지역이 20.0%, 남부(Sur) 지역이 14.9%, 북동해양(Marina Noreste) 지역이 7.4%를 차지한다. 이중 71.9%가 수반가스매장이고, 28.1%가 비수반가스 매장지이다.[72] 또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확인매장량이 16조 8146억 입방피

70)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10~2025년 멕시코 천연가스시장 전망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84면.
71)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84면에서 재인용.
72) 멕시코에너지부, 앞의 책, 92면

트(27.5%), 추정매장량이 20조 6943억 입방피트(33.8%), 가능매장량이 23조 7272억 입방피트(38.7%)이다. 확인매장량 중 처리시설에 공급되는 매장량은 14조 8242억 입방피트이다.

제 3 절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환경

Ⅰ.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1980년대 말까지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는 각종 제약요소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과거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제도는 국수주의적 성격이 강했으나 1982년 외채로 인한 경제 파탄이 일어나면서 외자도입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투자를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73] 1989년 카를로스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대통령이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1973년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기본 원칙이었던 반면에, 1989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처럼 법률과 시행령이 상호충돌하게 된 것은 당시 멕시코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86년 정치개혁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 추가되면서 하원 의원 총수는 500명이 되었다. 1988년 선거에서 집권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은 500석 가운데 260석을 차지하는 데 그침으로써 과반수의석은 확보하였지만, 의회 내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의회 내 절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헌법개정이 힘들어짐을 의미한다. 멕시코헌법은 법률적 수준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추진하기

73) 1989년 외국인투자법의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던 것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문남권,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의 발전과 구성”, 중남미연구, 제21권, 2002, 5-8면 참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원했으나, 야당과의 협상이 용이하지 않았다.[74] 이와 같은 정치환경 속에서 살리나스 대통령과 집권당은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다.[75]

또한 1989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 다르게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네거티브 목록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소수지분 참여가 허용되는 분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는 분야를 제외한 미분류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었다.[76]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77]

이후 멕시코는 미국과의 NAFTA협정 체결을 앞두고 1993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고,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였다. NAFTA 발효와 맞물리면서 외국인투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78]

Ⅱ. 투자환경

멕시코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요인은 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의 인접국가인 점이다. 단순히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NAFTA 회

74) 金廷泫, "分占政府에 관한 憲法的 硏究", 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大學院, 2011, 190면.

75) 문남권, 앞의 글, 8면 참조.

76) 문남권, 앞의 글, 8-9면 참조.

77) 1989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문준조,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 중국・필리핀・멕시코・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93-97면.

78) 김진오,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투자법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특집호, 2012, 13면.

원국이기 때문에 멕시코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면제 내지 인하의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멕시코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기업과 자본들은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수출의 약 80%, 수입의 약 5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유치를 비롯한 모든 경제부문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79)]

그리고 멕시코의 인구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약 1억1천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다. 이는 향후 잠재적 수요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근의 중미 및 카리브는 물론 멕시코와 FTA 협정을 체결한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의 지역에 수출할 경우 관세율이 낮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게다가 비교적 낮은 인건비에 비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높은 편이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Ⅲ. 투자 인센티브

멕시코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편이다. 투자인센티브의 경우 자국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평가할 수 없다. 멕시코 정부는 과거에 투자를 유치, 장려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지만, 최근에는 국영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제 인센티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80)]

세제인센티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투자한 설비에 관한 가중 감가상각률 적용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 자본의 50~84%를 투자한 지 1

79) KOTRA(편),「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서울: KOTRA, 2008, 33면.
80) KOTRA(편),「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서울: KOTRA, 2008, 27면.

년 만에 세법상 자산(Activo)이 아닌 세금공제대상이 되는 지출(Gasto)로 보아 그 액수만큼 소득세(ISR), 부가가치세(IVA) 및 기업동일세(IETU, 구 자산세 IMPAC) 부담이 경감된다.[81)]

그리고 각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교육훈련비 지원, 2% 대의 Payroll Tax(지급 고용주세) 감면, 부동산 등록세・취득세・재산세・자산등록 비용・토지 이용세・건축인허비용・각종 인지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82)]

지방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투자 건별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다. 그 외에도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인센티브는 투자의 규모와 성격, 정부 담당자 등에 영향을 받기 쉽고, 이에 따라 제공범위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83)]

제 4 절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

Ⅰ. 한국의 진출 현황

1992년 멕시코 광업법의 개정으로 외국자본이 멕시코 내 등록을 할 경우 광업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멕시코 광업진출은 활발하지 않다. 197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멕시코 광산 조사는 총 6 차례 실시되었을 뿐이고, 2004년 소노라 주의 금・동 광산 탐광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다.[84)] 2011년 주 멕시코 대사관은 소노라주 Armando Cordova 경제부 광업국장을 면담, 주내 광업

81) KOTRA(편), 앞의 책, 27면.
82) KOTRA(편), 앞의 책, 28면.
83) KOTRA(편), 앞의 책, 28-29면.
84) 황정한, “멕시코 광업, 외국인 투자 활발”, KOTRA, 경제/산업동향, 2007.5.30일자.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한 후 한국은 해외에서의 광물 수입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도 모색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멕시코내 대표적인 광업 지역인 소노라주와의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85)]

멕시코광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은 캐나다와 미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AFTA체결과 지리적인 이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캐나다 기업이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표 7> 2007년 대멕시코 광업투자 외국기업의 국가별 현황[86)]

국 가	투자건수
캐나다	372 (80%)
미국	46 (10%)
호주	26 (5%)
영국	11 (2%)
스위스	5
칠레	4
룩셈부르크	2
페루	1
중국	1
총계	468

85) 자료출처: 중남미자원협력인프라센터 http://energia.mofat.go.kr/2010/energy/resource_view.asp?szAbsolutePage=1&txtIdx=3111&mode=&txtNationalCode=05&txtResourceCode=02&sltSearchTarget=Title&txtSearchWord=

86) 주 멕시코 대사관, “2008년 광업생산 현황보고서”, 주 멕시코 대사관, 2008, 5, 1면.

이처럼 멕시코 광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영미계통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멕시코 기업과 캐나다 및 미국의 기업들이 주요 광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은 광산을 신규로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국이다.

Ⅱ. 볼레오 프로젝트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의 대표적인 사례는 볼레오 프로젝트(BOLEO Project)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LS-니꼬, 현대하이스코, SK Networks, 일진머티리얼즈 등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지분 30%를 약 2460억원(246만달러)에 인수해서 원자재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사업은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볼레오 동광의 매장량은 약 2억8000만t으로, 2010년부터 24년간 매년 4만1000t을 생산하고, 이 가운 데 우리 기업들이 매년 1만2000t을 갖게 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자금난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컨소시엄은 기존의 30% 지분을 51%로 늘리고, CEO 선임권을 갖기 위해 실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10%), LS니꼬동제련(8%), 현대하이스코(5%), SK네트웍스(5%), 일진소재산업(2%) 등 5개사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은 2008년 바하마이닝이 보유한 볼레오 광산 지분 30%를 인수한 바 있다.[87]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지분 70%를 보유한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의

87) 매일경제신문, 2012.9.24일자.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다. 바하마이닝사는 최근까지 극심한 자금난으로 파산설이 나돌고, 주가가 한 달 사이 70% 이상 폭락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 개발 사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 2013년 상반기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해 발전소와 도로, 항구, 통신 등 광산 개발에 필요한 플랜트 시설을 건설하고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가 23년간 연간 동 3만8천t, 코발트 1천600t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1년 6월에는 현지에서 플랜트 기공식을 열었다. 볼레오 광산은 현재 개발이 50% 가량 진척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국내 컨소시움은 이에 2천억원~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88]

<볼레오 프로젝트 현황>

○ 위치 : 멕시코 Baja반도 동부 Santa Rosalia市
○ 광종 : 동, 아연, 코발트, 망간
○ 광업권자 : MMB (운영사)
○ 사업단계 : 개발단계('12.5말 건설공정률 : 52.6%)
○ 가채광량 : 71백만톤 (Cu@1.40%)
○ 생산규모 : 전기동 38천톤/년, 코발트 1.6천톤/년, 황산아연 28천톤/년
- 매출비중 : 동(71%), 코발트(20%), 황산아연(8%), 기타(1%)
- 생산방법 : 갱내/노천채광 및 습식제련
- 가행년수 : 24년
○ 지분구도
- (한국측) 광자공 10%, LS-니꼬 8%, 현대하이스코 5%, SK Networks 5%, 일진머티리얼즈 2%
- (캐나다) Baja Mining 70%

88) EBN 산업뉴스, 2012.8.2일자.

<그림 3> 볼레오 프로젝트 지분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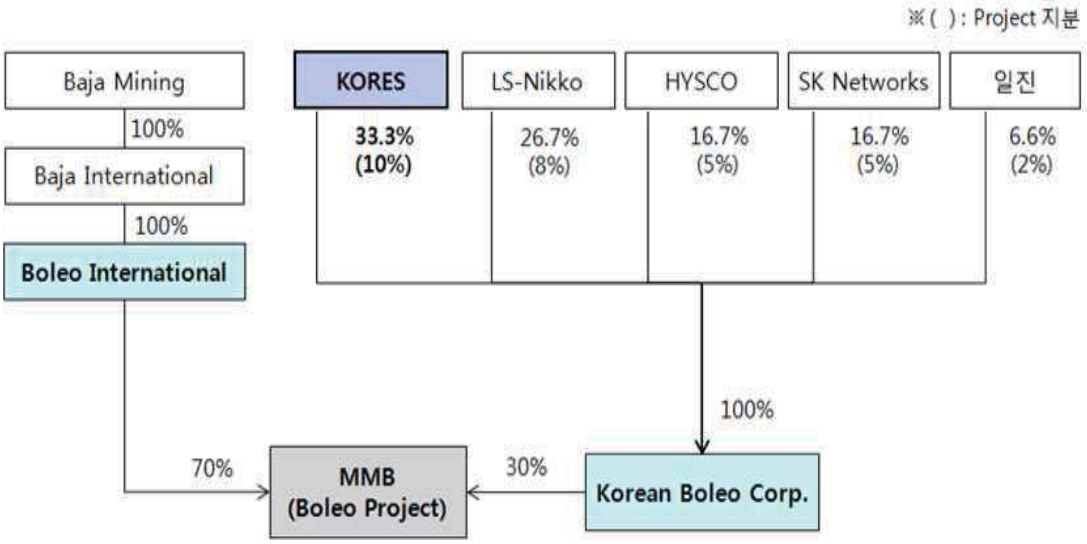

제 3 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 1 절 개 관

멕시코헌법은 다른 국가의 헌법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헌법은 정부조직의 제도적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목적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국가의 목적에 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 제25조는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에 관한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5조는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6조는 국가발전계획과 국가통계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국가의 재산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8조는 국가의 경제정책의 전반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멕시코 헌법의 국가의 목적 규정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정책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개정 또는 추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해서 국민투표가 필요 없고,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족하다.[89] 이처럼 멕시코헌법은 특유의 연성적 성격과 맞물려 법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

89) 멕시코 헌법 제135조는 헌법개정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을 추가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the Congress of the Union)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고, 주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한다(헌법 제135조).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는 헌법과 하위법률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멕시코 헌법의 원자재 관련 내용

Ⅰ. 헌법의 국가주의적 성격

현행 멕시코헌법은 1917년 제정되었는데, 1910년 멕시코 혁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는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의 강한 증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주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총 136개의 조항 중 특히 헌법 제27조를 보면 이와 같은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우선,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가의 토지와 강의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3항은 국가의 자원보전 감독권과 천연자원의 이용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천연자원의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제4항은 도서지역의 대륙붕과 해저층에 있는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정하고 있다. 제5항은 영해 내의 자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제6항은 허가권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항은 국가가 자원의 비축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이처럼 헌법 제27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고, 이들 법률들이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국가소유권의 천명

멕시코헌법 제27조는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은 우선적으로 국가소유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멕시코 국경 내의 토지와 강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국가는 그 권리를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고, 그 결과 토지와 강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이에 따르면 멕시코의 토지와 강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속하지만, 국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멕시코에서는 토지와 자원에 대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일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상 정한 요건 외에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27조 제2항은 "사유재산은 공공용도의 이유가 없이 수용하지 못하며, 수용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공공용도의 이유 없이 수용을 하지 못하고,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Ⅲ. 천연자원 이용의 규제

멕시코 헌법 제27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천연자원 이용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90] 제3항은 각종 토지개발 및 이와 관련한 천연자원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부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 자원보전을 감독하며, 균형잡힌 국가의 발전과 도농인구의 생활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사유재산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제한을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용되기 쉬운 천연자원의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정착을 준비하며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건설・보존・개선・주민 중심지의 성장을 계획 및 규제할 목적으로 토지・수자원・숲의 충분한 공급・사용・비축・최종 사용을

90) Rodrigo Sanchez-Mejorada V., "MINING LAW IN MEXICO",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Vol. 9, No. 1, (2000), p. 130.

결정한다. 또한 생태계균형을 유지 및 회복하고, 대토지를 분할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공유지와 공동체의 조직과 집단적 기능을 관리하고, 소농지 개발을 보장하며, 농업・목축업・입업과 농촌 환경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한다. 한편, 천연자원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손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27조 제3항).

제27조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대륙붕과 해저층에 있는 모든 천연자원과 영해 내의 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과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대륙붕과 해저층의 모든 천연자원・광맥・지층・집괴에 있는 모든 광물이나 물질, 공업용 금속과 비금속이 나오는 광물처럼 토양의 구성요소와 자연적으로 구별되는 광상을 이루는 광석층, 보석용 원석・암염・해수로 형성된 소금 퇴적물, 채취하려면 지하작업이 필요한 암석 분해로 나온 산물, 비료로 활용가능한 광물이나 유기층 물질, 고체 광물 연료, 석유와 모든 고체, 액체, 기체 탄화수소, 국제법에 규정된 범위와 조건 내의 영공은 국가가 직접 소유한다(제4항). 한편, 제27조 제8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국가는 연방의회의 법률에 따라 규정된 주권과 관할권에 따라 영해 밖과 그 근처에 위치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배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200해리이다. 이 범위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충돌할 경우에는 필요시 해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각 수역의 경계선을 결정한다(제8항).

영해의 수역은 국제법에 규정된 한계와 조건 내에서 국가의 재산이고, 내해수역・바다와 항상 또는 수시로 연결되는 석호와 하구,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과 이에 직접 연결된 천연 내륙 호수, 첫 영구천이나 간헐천, 급류가 시작되는 수원 지점부터 바다나 규유지인 호수・석호, 하구에 있는 강어귀까지의 강과 그 직접적 지류, 강바닥이 그 길이의 전부와 일부를 따라서 국경이나 두 연방의 경계선 역할을 하거나

한 연방의 경계에서 다른 연방의 경계로 흐르거나 국경선을 가로지를 경우 항상 또는 간헐적으로 흐르는 강과 시내 및 그 직간접 지류 및 그 유역, 암층・기슭으로 두 지역의 경계선이나 멕시코와 인접국의 국경선이 지나가거나 그 해안선이 두 연방 구성체나 멕시코와 인접국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호수・석호, 하구・국내 해변・해안지대・호수・석호・하구의 바닥・유역・기슭에서 발원하는 샘, 광산에서 끌어낸 수자원,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서 내륙호수의 수로・바닥・기슭도 국유이다. 토지소유자는 지하수를 인위적 작업으로 지표로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으나, 공익상 필요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영향을 줄 때에는 연방정부는 공유지인 여타수역과 마찬가지로 그 추출 및 사용을 규제하고 심지어 지하수 추출이 금지되는 지대를 정할 수 있다. 전술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외의 물은 통과하거나 고여 있는 곳의 구성부분으로 간주되나, 둘 이상의 토지에 위치한 물의 사용은 공익상의 문제가 되므로 각 주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다(제5항).

이처럼 멕시코헌법은 국가의 자원이용에 대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국가의 천연자원 이용 규제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헌법의 특징은 자원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주의의 중요성을 강하게 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6항은 허가권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서 두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고,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개인이나 멕시코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해당 자원을 개발, 사용, 도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정부가 부여한 허가권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광물과 물질의 채굴이나 개발에 관한 법률은 허가권 부여 날짜와 무관하게, 시행 후 진행하거나 진행되어야 할 내용

을 집행 및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되, 그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권은 취소된다(제6항).

헌법 제27조 제7항은 국가가 자원의 비축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자원개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연방정부는 국가의 비축량을 결정하거나 폐지할 권한이 있다. 이에 관한 발표는 연방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 조건에 따라 한다. 석유나 고체, 액체, 기체 탄화수소의 채취 또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면허나 계약은 허용되지 않고, 허용된 것은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관한 규제법률에 따라 생산물의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국가는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전력을 생산, 관리, 변형, 배급, 공급하는 독점권을 갖는다. 이에 관한 허가권은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국가는 목적 달성 범위내에 필요한 재산과 천연자원을 이용한다. 또한 국가는 원자력발전을 위해 핵 연소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용도나 목적에 적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단, 원자력 사용은 평화적 목적에만 허용된다(제7항).

Ⅳ. 소유권의 취득 자격

헌법 제27조 제9항은 강과 토지의 소유권 취득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자재개발법제와 관련한 조항으로는 제1호와 제18호를 들 수 있다. 국가의 토지와 강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다음과 같다(제9항). 출생이나 귀화에 의한 멕시코 국민과 멕시코 회사만 토지와 강, 그 부속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광산이나 강의 개발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데,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는 그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으로 간주되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기로 외무부와 협약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

득한 재산을 국가에 몰수당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국경으로부터 100㎞, 해안으로부터 50㎞ 범위 내의 토지나 강의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제1호).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멕시코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1876년 이후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의 토지·강·천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전 정부의 모든 계약과 허가권은 변경이 가능하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계약과 허가권이 공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제18호).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와 체결했던 각종 독점권을 정부가 사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원개발에 관한 독점적인 개발허가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멕시코 정부가 언제든지 부정할 수 있다. 정부의 교체를 비롯한 각종 정치환경의 변화, 경제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기존에 보장되었던 자원개발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한다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제 3 절 멕시코 광업법의 주요내용

Ⅰ. 광업법 개관

멕시코 원자재 개발 관련법제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광업법을 들 수 있다. 멕시코의 역사에서 광업은 큰 비중을 갖는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카톨릭 교세의 확장이기도 했지만, 중요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이기도 했다. 스페인은 그만큼 멕시코의 자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부터 1821년까지 스페인이 멕시코를 지배하는 기간 동안 스페인법률이 멕시코 광

업을 규율했다.[91] 현행 멕시코 광업법(Ley Minera)은 1992년 6월 26일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6년 6월 26일에 이루어졌다. 광업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과 적용)
- 제 2 조(광물의 범위)
- 제 3 조(정의)
- 제 4 조(광물의 종류)
- 제 5 조(적용의 제외)
- 제 6 조(적용범위)
- 제 7 조(경제부의 권한)
- 제 8 조(시행규칙의 범위)
- 제 9 조(광물자원심의위원회)

제 2 장 광업권설정, 분배 및 국가유보광구
- 제10조(탐사 및 채굴의 자격)
- 제11조(광업권 양도)
- 제12조(광구)
- 제13조(양도)
- 제14조(자유화 지역)
- 제15조(채굴권의 기간)
- 제16조(광업권의 기간)
- 제17조(해제)
- 제18조(경제부의 명령권)

제 3 장 채굴권 및 양도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제19조(탐광 및 채굴권자의 권리)
- 제20조～제21조(경제부의 업무)
- 제22조(광업권의 대여)

91) Rodrigo Sanchez-Mejorada V., “MINING LAW IN MEXICO”,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Vol. 9, No. 1, 2000, pp. 129-131 참조.

제23조～제24조(광업권의 양도)
제25조(채굴권)
제26조(양도권)

제 4 장 광업채굴권, 양도권 및 제련사업에 부과되는 의무
제27조(탐광 및 채굴권자의 의무)
제28조～제32조(증명)
제33조(납세의무의 면제)
제34조(보안책임)
제35조(발견지원금의 지불)
제36조(보고서 제출의무)
제37조(광물 또는 물질의 제련자의 의무)
제38조(제3자 광석의 수취금지)
제39조(광업양수권자의 의무)

제 5 장 권리의 실효, 취소, 일시정지 및 변경
제40조(자격상실)
제41조(무효)
제42조(취소)
제43조(정지)
제44조(무효공시)
제45조(결정)

제 6 장 광업등기소 및 광업지도
제46조～제47조(등록)
제48조～제50조(증명서)
제51조～제52조(광업지도)

제 7 장 감독, 제재 및 조치
제53조(감독)
제54조(제재)
제55조～제56조((취소조치)
제57조～제59조(벌금 및 처벌)

Ⅱ. 총 칙

1. 연방법률

총칙규정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이다. 멕시코광업법은 광업과 관련된 국가의 재산에 관한 헌법 제27조를 법규화 한 것이다. 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연방전역에 대한 공식 규정이다. 그리고 광업법의 적용은 연방정부 관할 하에 경제부(la Secretaría de Economía) 책임으로 행해진다(제1조). 광업법이 헌법 제27조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과 연방전역[92]에 적용되는 연방법률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관할 부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광업법에 규정된 광물 또는 물질의 탐사, 채굴 및 선광작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작업일 때 본법이 정하는 조건 내에서 어떠한 토지의 사용 또는 이용에 우선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연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다(제6조).

2. 광물의 범위와 정의

광업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광물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제2조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광맥, 지층, 괴상, 광층 등에서 토지 성분과 다른 특성을 가진 광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또는 물질의 탐사, 채굴, 선광은 본법의 규정을 따르며, 현존하는 바다에서 지상, 지하로 유입된 해수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 소금광산,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소금 및 그 부산물의 경우도 같다(제2조).

그리고 제3조와 제4조는 정의규정이다. 제3조는 광업법의 시행과 관련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탐사: 광물 또는 물질

92) 멕시코는 31개의 주(Estado)와 1개의 연방구(Distrito Federal)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국가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연방헌법-주헌법, 연방법률-주법률의 체계를 갖고 있다.

이 함유된 광상을 확인하고 경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매장량을 산정하며 그 질을 평가할 목적으로 광구에서 행해지는 공사 및 작업 일반 ② 채굴: 광상이 위치한 지역의 운영 준비나 개발, 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자원 또는 물질의 분리, 추출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사 및 작업 일반, ③ 선광: 단계에 관계없이, 광물 또는 물질의 회수, 취득 및 그 함유농도와 순도를 높일 목적으로 광물자원을 준비, 가공, 1차 제련, 정련하는 작업 일반으로 정의된다.

제4조는 광맥, 지층, 괴상, 광층 등에서 토지 성분과 다른 특성을 가진 광상을 구성하는 것을 광물이라 하고, 이에 속하는 하위분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금속광물 : 안티몬, 비소, 바륨, 베릴륨, 창연, 붕소, 취소, 카드뮴, 세슘, 코발트, 구리, 크롬, 스칸듐, 주석, 스트론튬, 불소, 인,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철, 인듐, 이리듐, 이트륨, 란탄계열원소, 리튬, 마그네슘, 망간, 수은, 몰리브덴, 니오브, 니켈, 금, 오스뮴, 팔라듐, 은, 백금, 납, 칼륨, 레늄, 로듐, 루비듐, 루테늄, 셀레늄, 나트륨, 탈륨, 탄탈, 텔루르,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아연, 지르코늄 및 요오드를 추출할 수 있는 광물이나 물질, ② 산업광물 : 녹섬석, 명반, 백반석, 황석면, 홍주석, 경석고, 직섬석, 황, 중정석, 철반석, 흑운모, 블로에디트, 베마이트, 붕산염, 수활석, 카널라이트, 천청석, 남정석, 근청석, 강옥, 온석면, 청석면, 크로뮴철석, 석영, 백운석, 사리염, 십자석, 금운모, 인산염, 형석, 황산칼륨, 석회망초, 흑연, 석류석, 암염, 히드로마그네사이트, 카이나이트, 황산고토석, 랑바인석, 마그네사이트, 운모, 황조광, 물라이트, 백운모, 니트라틴, 감람석, 산성백토, 납석, 폴리할라이트, 해포석, 규선석, 칼리 암염, 활석, 염회고토석, 망초석, 투섬석, 중탄산소다석, 질석, 독중석, 규회석, 석고, 비석, 지르콘, ②-1 규조토, ③ 희토류(삭제), ④ 보석광물 : 아쿠아마린, 알렉산드리아, 자수정, 천하석, 사금석, 녹주석, 금록석, 청석면, 다이아몬드, 취동광, 녹렴석, 주석, 에메랄드, 첨

정석, 스포듀민, 경옥, 쿤사이트, 청금석, 공작석, 모가나이트, 감람석, 단백석, 조심석, 홍옥, 방조달석, 탄자나이트, 황옥, 전기석, 터키석, 베수비어스석, 청옥, ⑤ 암염, ⑥ 고령토, 산성백토 등의 각종 점토, 규사, 장석, 사장석과 같이 채굴을 위해 지하작업이 필요할 때 암반을 분쇄하여 생성된 물질, ⑦ 비료로 쓰이기 쉬운 광물 또는 유기물: 인회석, 송진, 포스포시데라이트, 프랑코라이트, 바리스사이트, 은청석, 구아노, ⑧ 각종 석탄 및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 ⑨ 기타 연방정부가 신기술 개발에 힘입은 산업적 이용, 국제시장 시세, 합리적 채굴 및 사회이익을 위한 재생불가자원의 보존을 추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보에 고시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⑨항과 관련한 광물의 탐광 또는 채굴을 실시중인 자가 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상응하는 광업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광업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채굴권 설정을 출원하는 이에게는 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제5조는 광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석유 및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 단,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는 예외로 한다. ② 방사성 광물, ③ 토지 성분과 다른 성분의 광상에서 유래한 경우를 제외한, 지하수에 의해 부유되거나 용해되어 내포된 물질, ④ 건축자재 제조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거나 이용되는 암반 및 그 분쇄물, ⑤ 지상에서의 옥외작업으로 채굴이 이루어지는 암반의 분쇄물, ⑥ 내륙의 하천 유역에 형성된 소금광산에서 생산한 소금 등이다. 반대해석을 하자면 제5조가 열거하고 있는 광물질이외의 것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3. 경제부의 권한

멕시코에서는 광물을 수출 및 투자 유치 분야로 인식하여 에너지부가 아닌 경제부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부 1급인 광물총괄조정

관(Coordinacion General de Mineria)이 광물산업을 총괄하며 산하에 광업법 및 제도를 관장하는 광업국(DGM), 광업투자정보를 관장하는 광업진흥국(DGPM), 광물산업 금융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관장하는 광물신용(FIFOMI), 지질정보 조사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지질조사소(SGM)의 조직을 두고 있다.

광업법 제7조는 경제부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국국가가 보유한 광물자원의 합리적 활용 및 보존조치. 탐사, 채굴에 대한 규율 및 사업 추진한다. ② 광업분야를 다루는 자체프로그램의 제작, 추진. 중소 규모의 광업기업 및 관련 업종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 지역 등의 프로그램 및 기타 특별프로그램의 입안에 대한 조율, 평가, 후속 지원 등 을 실시한다. ③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이 관장하는 광업 및 금속공업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④ 멕시코공식표준 및 멕시코표준 광업, 금속공업분야에서 다루는 광산의 위생 및 안전, 산업보건, 생태균형, 환경보호 등에 대한 기준의 설정에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한다. ④ -2 광업법 관련 내부규칙에 규정된 기술적 견해에 대한 해명을 한다. ⑤ 광물 또는 물질의 채굴 허용 여부 및 광업개발 제한지역의 광상지정권 또는 해제 결정을 위한 부령 초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한다. ⑥ 채굴권, 광상지정권의 설정 및 동 권리들의 무효, 취소, 효력정지, 부존재에 대한 처분을 한다. ⑦ 광업권등록증의 통합관리 및 본법의 적용으로 광물 또는 물질의 탐사, 채굴, 선광을 실시를 할 경우 사용이 필요불가결한 토지의 수용이나 가점유, 지역권 설정 신청에 대해 본법 및 다른 근거법률에 따라 처분을 시행한다. ⑧ 광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수익을 부인하는 이들에 의해 유발된 분쟁을 해결한다. ⑨ 광물의 생산량 및 수익, 용처, 광층, 광물매장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광업기업 및 금속공업기업의 경제, 회계 상태 등 기밀을 요하는 정보의 제공 및 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광광업원부와 구역도를 현장에 가져가 최신자료로 구역도를 정리하기 위한 각종 측량

및 측지작업을 실시한다. ⑪ 권리자와의 사전 논의 및 행정절차를 통해 제3자의 이해관계가 없는 채굴권, 광상지정권 등록증 상의 오류를 수정한다. ⑫ 본법에 의해 광업권 설정이 가능한 광물 또는 물질을 탐사, 채굴 선광하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책무, 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그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⑬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의 합리적 활용 및 효율적 이용 보장을 위한 복원, 활용정책을 수립하고 갱신한다. ⑭ 다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의 복원, 활용을 위한 용어, 조건의 설정 및 기술적 성격의 행정법령을 입안한다. ⑮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의 복원 및 활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에너광상지정권책과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⑯본법으로 예정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을 시행한다. ⑰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경제부는 광업법이 정하고 있는 검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연방기관 주 및 군 당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8조에 따라 경제부는 제7조 ②항이 정한 중소광업기업 및 관련 업종 진흥계획을 결정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다. 광업법 본법의 시행령은 상기 프로그램 및 본조에 의해 예정된 조치의 실행을 위한 체제 전반을 구축하고 매출량, 추출톤수, 국내생산비율에 기초한 중소광산업자의 특성을 광물, 물질별로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는 멕시코지질조사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광물자원 활용 및 국가의 기본적인 지질학적 정보 수집을 추진하기 위해 부는 독자적인 법인격 및 재원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공공기관, 멕시코지질조사소의 지원을 받으며 관련분야 업무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멕시코지질조사소는 그 법정주소를 이달고주 파추카에 두며, 운영재원은 연방정부의 출자, 발견성과급, 본법에 기술된 경쟁입찰을 통해 수령하는 경제적 반대급부, 제공하는 서비스로

얻는 수입금, 기타 여러 방법으로 획득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멕시코지질조사소의 운영은 별도의 정부기구와 소장이 담당한다. 정부기구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의장인 경제부장관, 경제부 대표 2인, 재정부 대표 1인, 사회발전부 대표 1인, 환경자연자원부 대표 1인, 에너지부 대표 1인, 광업개발신탁 대표 1인. 이외, 정부기구 의장에 의해 지명초정된 이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투표권 없이 회의에 참석하며, 이들은 3인 한도의 멕시코 광업분야의 민간기구 대표, 광업분야의 노동조합 대표 1인, 관련 업종 광업기구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는 구성원 정수의 절반에 1인을 더한 수치이며, 참석자의 과반수는 연방의 공공행정기관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안건의 의결은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표결결과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소장은 부의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공단체에 대한 연방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의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멕시코지질조사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수준의 국가 광물자원 활용을 위한 지질학, 광업학, 금속공학 연구 추진 및 시행 ② 국가의 잠재적 광물자원 확인 및 추산 ③ 국가의 광상목록 작성 ④ 국가의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적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⑤ 요청된 축도로 작성된 멕시코지질도의 제작 및 최신 자료 갱신 유지 ⑥ 국제표준을 적용한 국토의 지구화학적 정보 제공. 심토의 지구물리학적 특성 정리 및 해석 제시 ⑦ 중소광업기업 및 관련 업종에 광상평가, 금속가공공정, 광물표본의 물리화학적 분석 등을 위한 기술적 자문 제공 ⑧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있는 표본의 화학적, 물리화학적, 금속공학적, 지질학적 분석을 위한 실험서비스, 연구, 해석의 제공 ⑨ 탐사를 위한 위험분산투자기금에 참여 ⑩ 채굴가능한 광물 또는 물질의 결정, 광업개발제한지역의 광상지정권 및 해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부

에 제공 ⑪ 지구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국내외 공공민간분야 기구, 기관들과의 업무협력 ⑫ 국내외 자연인, 법인, 공공민간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외부의 고객들에게 본조로 규정된 서비스의 제공 ⑬ 국토의 이용계획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질학적 위험, 생태학, 영토 문제, 지하수학, 지질공학 연구의 기여 ⑭ 국가의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광업 정보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구의 과학정보 취득 및 보존 ⑮ 국내외에서 지구과학을 주제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여 ⑯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자연보호지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⑰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58조에 따라 요청되는 지질학, 지구화학, 지구물리학 정보 및 광물자원의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사용, 활용에 대한 기술적 자문 제공 ⑱ 광구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인프라공사 시행안을 선정하여 부에 추진토록 권고 ⑲ 국가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활용 수준의 개선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도입 및 응용 ⑳ 본법에 기술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서 부를 보좌 ㉑ 부의 요청에 따라 부가 관여하는 감정 및 실지조사에 부의 자문 및 검증기구로 활동 ㉒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광물매장량 증명원 발급 ㉓ 본법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질조사소의 명의로 부여된 광상지정권 범위내의 광체에서 진행될 공사 및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입찰계약의 체결 ㉔ 연방정부의 협정으로 정해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제공서비스의 요금 책정 및 조정 ㉕ 적용가능 법규 및 주정부과 체결한 협정 등으로 배정된 예산에 따라, 광업박물관 건립 추진을 통한 지질학, 광업, 금속공학 지식의 증진 및 보급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공조 ㉖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활동의 수행

Ⅲ. 국가의 광업권

제10조는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 기술된 광물이나 물질, 현존하는 바다에서 지상, 지하로 유입된 해수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 소금광산,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한 소금 및 그 부산물의 탐사, 채굴은 멕시코 국적을 가진 자연인, 농업조합 및 공동체, 헌법 제2조에 기술되어 연방구성체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인정된 원주민 촌락 및 공동체, 멕시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한하여 부가 부여하는 채굴권 설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국가의 잠재적 광물자원의 확인 및 수량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국토의 탐사는 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그 목록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광상지정권을 근거로 멕시코지질조사소가 수행한다. 공익을 이유로 하거나 국가의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 연방관보에 공포되는 연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광업개발제한지역이 설정될 수 있다. 해당 개발제한지역에 광상지정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채굴권 및 광상지정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채굴권 및 광상지정권, 광업개발제한지역 광상지정권고시는 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조건 및 요건을 충족시키고 제3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발행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광업권은 원칙적으로 멕시코 국적을 지닌 내국인 등만 갖게 되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외국인이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제11조는 법인이 광업권 명의인 자격을 갖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하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고 멕시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광업권 명의인 자격을 갖는다. ① 회사의 정관에 본법의 적용을 받는 광물 또는 물질의 탐사나 채굴이 기술되어 있을 것 ② 법적 주소가 멕시코 공화국 내에 있을 것 ③ 외국인투자자가 지주로 참여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이 광업권 명의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소가 멕시코에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자본 참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자본 참가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 광구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모든 채굴권, 광상지정권, 광업개발제한지역광상지정권은 고체 형태로 심도가 무한대인 한 곳의 광체를 대상으로 기술되어야하며, 그 상층은 토지표면으로 포함된 경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광체 경계를 구성하는 면은 천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위도 경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각 면의 길이는 백미터에서 수백미터의 거리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적용할 경우, 다른 광체와의 경계를 확정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체의 위치는 측점이라는 이름으로 광체의 경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그 윗부분에 존재하는 토지의 고정점을 근거로 결정한다. 측점의 연결은 광체 경계의 동서남북 어느 면에든지 수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제13조는 특정지역에서의 입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굴권과 광상지정권은 광체의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최초로 설정을 출원한 이에게 부여하며, 이를 위해 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조건 및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광체 매장 지역의 미설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의 고시가 효력이 발휘되어 1건 이상의 채굴권설정 출원 및 1건 이상의 광상지정권설정 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 출원을 광상지정권설정 출원에 우선시켜 접수 및 수속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토지가 원주민 촌락이나 공동체의 거주지역내에 있어 점유된 상태에서 해당 원주민 촌락이나 공동체가 다른 이들과 동시에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 경우에는 원주민 촌락이나 공동체의 출원이 우선권을 가지며, 이를 위해 본법 및 그 시

행령이 규정한 조건 및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광상지정권이 취소되거나 광업개발제한지역의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의 미설정 상태가 선언되기 전 경쟁입찰을 통해 채굴권을 부여할 수 있다. 멕시코 지질조사소의 광상지정권을 통해 사전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중간단계 세부과정의 탐사공사 및 작업을 통해 얻어진 지역의 매장량을 근거로 광업개발제한지역으로 광상지정권하는 것이 타당이 있거나 공익적 명분이 증명된 경우, 국가의 책임하에 관할하는 전략지역의 광물 또는 물질로 간주된 때에는 광업개발제한지역 광상지정권만을 할 수 있다(제13조).

2005년 4월 28일 신설된 제13조의 2는 채굴권 부여의 경쟁입찰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전조에 기술된 채굴권을 부여하는 경쟁입찰은 국가의 경제에 경제에 가장 유익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부는 연방관보 및 그외의 매체에 입찰공고를 한다. ② 경쟁입찰이 포함시켜야 될 최소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관련 토지나 지역에 대한 설명 및 기존 연구 실적, 지질학적 표본추출 위치도, b) 참가자가 증명해야할 법인격 및 기술력, 경제력에 대한 요건, c) 밀봉입찰방식 등 낙찰을 결정하기 위한 경제적 반대급부 및 발견성과급 제안서 제출 방식, d) 제안할 경제적 반대급부 및 발견성과급 이행 보장을 위해 제출해야할 계약서 조문 ③ 채굴권은 기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고 최고수준의 경제적 제안서를 제출한 이에게 수여하며, 이를 위해 제안된 경제적 반대급부 및 발견성과급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관련 토지가 원주민 촌락이나 공동체의 거주지역내에 있어 점유된 상태에서 해당 원주민 촌락이나 공동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타 입찰자가 제출한 최고수준의 경제적 제안서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경우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의 우선권은 원주민 촌락이나 공동체에 있다(제13조). 마지막 단락은 원주민 촌락

과 공동체의 우선권을 보장함으로써 광업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 기업간의 마찰과 대립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제14조는 자유화된 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자유화된 지역이란 다음에 기재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가리킨다. ① 광업개발제한지역, ② 유효한 채굴권 및 광상지정권, ③ 수속절차중에 있는 채굴권 및 광상지정권 설정 출원, ④ 경쟁입찰을 통해 부여된 채굴권 및 경쟁입찰을 통해 부여되어 사전에 취소된 경력이 있는 채굴권, ⑤ 관련 경쟁입찰이 유찰되었기에 채굴권이 부여되지 못한 광체이다. ④ 와 ⑤의 경우 부는 채굴권 취소 통보 및 경쟁입찰 유찰을 선언하는 처분의 연방관보 고시가 효력을 발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의 기간 동안 관련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새로운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설정 상태를 선언할 것인지 결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채굴권이 취소되는 기타의 경우 및 채굴권 또는 광상지정권의 출원이 불합격 처리되거나 철회의 대상이 된 경우, 부는 관련 통보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의 기간내에 해당 지역의 미설정 상태를 선언하는 내용의 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토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미설정 선언문이 게재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면 미설정상태가 된다. 채굴권 및 광상지정권이 타인으로 대체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방기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미설정상태가 된다.(제14조).

제15조는 채굴권의 기간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채굴권은 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광물과 물질에 대하여 부여된다.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광업원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50년이며 권리자가 본법에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5년안에 신청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동안, 관련 채굴권의 효력은 지속된다(제15조).

이 규정에 따라 채굴권은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외국인투자법인 포함)은 채굴권을 50년 동안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50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제16조는 광업권의 기간과 멕시코지질조사소(CRM)에 대한 서면보고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광상지정권은 본법의 적용에 따르는 모든 광물 또는 물질에 대해 부여되며 존속기간은 연방관보에 관련 권리가 게재된 날로부터 6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멕시코지질조사소은 각 광업권 할당 유효기간이 마감되기 전 실시했던 작업 결과를 경제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제부는 멕시코지질조사소의 서면보고를 통하여 공시 사항을 게재한다. ① 광상지정권의 취소 및 그에 따른 토지의 미설정상태, ② 광상지정권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채굴권을 부여하기위한 1회 이상의 경쟁입찰 실시계획, 방기되는 토지의 미설정상태, ③ 광상지정권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광업개발제한구역 지정, 방기되는 토지의 미설정상태. 상기 처분은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광상지정권 유효기간 만료전 처분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 부는 유효기간 만료후 30일내에 연방관보를 통해 해당 권리의 취소 및 그에 따른 토지의 미설정상태를 게재한다(제16조).

제17조는 해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국가유보광구 설정의 동기 원인이 변하였을 때 경제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대통령령을 발하여 해제를 공시한다. ① 법적으로 보호되는 토지의 자유화 공시, ② 1건 이상의 채굴권 부여를 위한 실시 및 방기되는 토지의 미설정상태 공시. 공시된 일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유보광구의 해제가 관보에 공시되지 않을 경우 국가유보광구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는 설정된 기간이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자유화된다.

제18조는 경제부의 명령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제부는 채굴권 또는 양도권 부여가 광업법에 명기되고 있는 자료의 실수나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발부된 사실이 발견될 때 광업권자에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그 권리의 정당성을 설명한 다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경제부는 당사자의 회답과 증거 서류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이에 의해 광업권과 광업등기소로의 등록 수정을 명령한다.

Ⅳ. 권리규정

광업법 제3장에 속하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채굴권자와 양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먼저 제19조는 탐광 및 채굴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권리가 그들에게 부여된다. ① 관련 광체 내에서 탐사, 채굴을 하기위한 공사 및 작업 실시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작업 또는 공사를 실시하여 그 광구로부터 얻어지는 광산물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법적으로 보호되는 광구 내에 퇴적되어져 있는 폐석을 처분할 수 있다, ④ 탐사, 채굴, 선광을 실시하기 위한 공사와 작업, 원석 부스러기, 찌끼, 광재, 광재처리물 적재를 위해 사용이 필요불가결한 토지의 수용이나 가점유, 지역권 설정, 광체를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하통행권을 설정한다, ⑤ 광취득되는 광물 또는 물질의 탐사, 채굴, 선광을 위한 채광작업장에서 유입되는 물 및 광산고용인력의 가정 하수를 활용할 수 있다, ⑥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전 항에서 정해진 이외의 용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갱내수의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⑦ 법적 자격을 갖춘 타인에게 채굴권의 명의 이전 및①~④항에의 권리를 양도한다, ⑧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을 감축, 분할 그리고 동일화 하거나 또는 인접한 다른 양도권을 병합할 수 있다, ⑨ 양도권 및 이것으로 부터 파생하는 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⑩ 본법으로 예정된 공사 및 작업의 검사 결과 및 통계 및 기술보고서 제출을 위한 2 이상

의 채굴권을 그룹화 할 수 있다, ⑪ 행정절차를 통한 채굴권 명의상의 오류 수정 및 등본 발급 신청할 수 있다, ⑫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과 동등한 기간만큼 채굴권을 연장할 수 있다. ⑬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의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에너지의 허가 취득. 활용의 용도는 자체소비 및 국영멕시코석유회사(페멕스) 납품, 두 종류로 나뉘어지며, 자체소비의 경우 그 공급방식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a) 석탄채굴을 목적으로 한는 광층 채굴권자는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석탄광층에 연계된 가스를 회수하여, 자체소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b)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를 국영멕시코석유회사로 운반, 납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부가 정하는 행정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c) 전 단락에 기술된 계약에 따른 가스 운반 및 납품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급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규정하며 회수, 운반, 기계작동,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투자자금 및 및 합리적 수익의 획득을 고려한다.

석유채굴권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 내의 탐광 또는 채굴의 공사 및 작업은 경제부가 인가하는 경우에만 실시가 가능하며, 부는 이를 위해 준수해야될 기술적 조건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부의 견해를 요청한다(제20조). 광업권 양도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제권리의 양도자는 광업등기소에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제3자와 경제부보다 먼저 법적 효력을 갖는다(제23조).

그리고 제26조는 양도권에 따르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법적으로 보호되는 광구 내에서 실시되는 탐광에 관한 작업 및 공사는 본 법 제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된다, ② 본 법 제21조가 정하는 각 항에 의거 탐광작업을 실시할 때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용익권의 설정권을 얻을 수 있다, ③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의 감축 또는 동일화를 행할 수 있다, ④ 양도권 또는 이것에 의해 파생

하는 제반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양도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저당의 대상도 될 수 없다.

Ⅴ. 의무규정

제4장에 속하는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은 각종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는 탐광 및 채굴권의 소지자가 발급일부터 부담하게 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본 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탐광 또는 채굴에 관련한 공사와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증명한다. ②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광업에 관련한 세금을 지불하고 그 세금의 지불증명서를 경제부에 제출한다.[93] ④ 광산야금산업에 적용되는 광산보안과 생태계 균형유지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 법규와 특별 기술 규정을 준수한다, ⑤ 광산의 안전에 필요한 보강건물 지보 및 설비 등 상설 건설물을 철거해서는 안된다. ⑥ 광구 기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식 또는 목인을 동일위치에 보전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⑦ 본 법과 그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는 기간과 조건에 관련된 통계적, 기술적 및 회계상의 보고서를 경제부에 제출한다. ⑧ 경제부로 부터 파견된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다. ⑨ 해당 채굴권이 유효기관 만료, 반납, 면적축소로 인한 교체, 법규 위반, 사법적 처분 등으로 소멸하거나 취소된 경우 부에 지질학, 광업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방기된 광체나 구역에서 행해진 탐사, 채굴 작업 등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⑩ 경쟁입찰에 의해 채굴권이 부여된 경우, 멕시코지질조사소에 매년 1월과 7월 관련 광체에서 행해진 작업 및 생산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제출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발견수당 및 기타 경제적 반대급부 지급의 효과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채굴

93) ③호는 2005년 4월 28일 삭제되었다.

권의 보호 하에 시행되는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의 복원 및 활용을 위한 관련 활동의 시작 및 잠정중단에 대해 에너지부에 통지한다. ⑫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의 복원 및 활용과 관련이 있는 지질학적 정보를 수집, 기록하여 주기적으로 에너지부에 제공한다. ⑬ 석탄광층의 탐사 및 채굴을 보장하는 채굴권의 산물로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가 발견된 경우 에너지부에 보고한다. ⑭ 석탄광층과 연계된 가스가 자체소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국영멕시코석유회사가 지정하는 연결지점에 공급한다.

Ⅵ. 권리의 취소 및 무효

제5장에 속하는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은 각종 권리의 취소 및 무효가 되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40조는 광산채굴권 및 광업권 양도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① 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광물 및 물질을 취득할 때, ② 본 법에 따라 부여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자격이 부여될 때, ③ 입찰에 의해 부여된 채굴권을 제외한 채굴권 또는 양도권의 대상이 되는 광구가, 후일 토지의 자유화가 공시된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이 행해졌던 시점에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유화되지 않는 경우, 채굴권 또는 양도권의 대상광구의 일부가 자유화되지 않은 경우, 그 중복하는 부분만이 무효가 되며 이 경우도 제반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권리가 교체되는 지역은 신규로 광업권이 부여된다.

제41조 채굴권의 명의 이전 혹은 이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 제반 권리의 양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채굴권 및 그 파생권리를 취득할 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행한 명의이전은 무효로 한다. 채권의 변제를 위한 낙찰이나 상속의 경우로 권리가 지정된

날로부터 365일 이내에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이에게 이전된 경우는 에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42조는 채굴권 및 양도권이 취소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①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② 권리자에 의해 방식이 준수된 반납, ③ 채굴권 관련 지역의 축소, 분할, 확인, 통합 등으로 발생된 신규 채굴권 발급이 사유가 된 교체, ④ 본법 제55조에 규정한 위반행위의 적발, ⑤ 사법적 처분

제43조에 따르면 탐광 또는 채굴의 공사 및 작업 실시권리가 ① 노동자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게 할 경우, ② 공공의 이익이 되는 재산을 파괴하고, 공공서비스 또는 사회소유물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던가 또는 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을 위한 방문 결과 절박한 위험 또는 피해가 발견되었을 때 경제부는 즉각 공사와 작업의 일시중지를 명령하고, 동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취해야 할 안전 조치를 지시한다.

또한 제44조에 따르면 ①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되어야 할 공사 또는 작업이 광업등기소에 등록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65일 이내에 개시되지 않을 경우, ② 본 법 제 31조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되어야 할 공사와 작업이 1년 이상 중단된 경우, ③ 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목적이 신청된 것과 다르고, 허위하고 판단된 경우, ④ 보상의 지불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⑤ 본 법 제 40조의 최종문단 및 제 42조 ③항에서 정해진 이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된 권리를 실시하기로 한 근거가 된 채굴권이 취소된 경우, ⑥ 재판부의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된 재산과 토지의 몰수, 그리고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용역권 설정의 무효공시가 행해진다. 토지의 몰수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시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 이내에 무근거라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재산반환이 이루어진다.

Ⅶ. 각종 행정조치

제46조에 따라 경제부는 광업등기소를 운영하고, ① 채굴권 명칭 및 그 유효기간 연장. 동 권리의 무효 및 취소, ② 광상지정권 명칭 및 그 유효기간 연장. 동 권리의 무효 및 취소, ③ 광업개발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④ 가점유, 지역권 설정 처분 및 그 부존재 처분, ⑤ 채굴권 및 그 파생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당국 및 행정당국에 의해 발행된 처분, ⑥ 채굴권 및 그 파생권리의 명의이전에 관련된 행위 또는 계약, 사전약속 및 예약, 계약의 부담 및 채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약 등, ⑦ 본법 제11조에 언급한 회사의 명단 및 그 해산, 청산. 본법의 시행령이 정한 정관의 변경,[94] ⑨계약의 체결을 동기로 기재한 공증인의 공시적 고지 사항 ⑩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등록사실의 정정, 변경, 무효 및 취소에서 파생된 사법부의 공시적 기재사항 ⑪ 시적 계약 및 협약의 등록 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적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부는 채굴권 및 광상지정권 설정 출원의 객체가 되는 광체의 미설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구역도를 현장에 가져갈 수 있다. 구역도에는 유효한 채굴권, 광상지정권, 광업제한지역 등으로 구분된 광체의 위치 및 경계를 그림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속중인 채굴권, 광상지정권 설정 출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같다. 누구나 구역도를 살펴보고, 자신의 부담으로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그리고 광산채굴권과 양도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5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채굴권을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광물 또

94) ⑧항은 2005년 4월 28일 삭제되었다.

는 물질의 채굴을 위해 사용한 경우, ② 본법으로 정한 공사 및 작업을 본법 및 그 시행령의 조건에 따라 시행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③ 광업권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95] ⑤ 발견수당이나 경제적 반대급부의 개념으로 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법 제27조 ⑩호에 기술된 연 2회 보고서를 멕시코지질조사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유광상지정권이 발효되어 있는 토지에서 석탄의 탐사, 채굴을 위해 이루어진 각종 공사, 작업이 부가 정한 기술적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⑦ 본법 제20조에 규정된 승인을 받지 않고, 본법에 규정된 공사 및 작업을 실행한 경우, ⑧ 경계를 공유하지 않는 광체들을 수합하여 기술적, 행정적 관점에서 하나의 광업 또는 광업금속공학적 단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제 4 절 멕시코의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Ⅰ. 멕시코의 석유 규제체계

멕시코 헌법은 원유 부분사업을 국가기관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은 멕시코국영석유공사(Pemex)만이 수행할 수 있다

멕시코 석유산업을 운영하는 기본원리는 멕시코합중국의 헌법 제25조, 27조,28조에 따른다. 이러한 원리들은, 멕시코 국내영토 내에 있는 매장지 또는 초국경 매장지에서 석유와 기타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 활동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제정하는 2차 입법, 규정, 멕시코의 공적 규범 및 지침들을 근거로 한다.

석유산업의 기본적인 규제프레임은 다음 순서들에 따른다.[96]

95) ④항은 2005년 4월 28일 삭제되었다.

96)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10~2025년 멕시코 석유시장 전망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52면.

* 멕시코 합중국 헌법
* 국제협약
* 석유부문에 대한 헌법 27조의 규제법령
* 연방 행정 기본법
* 국가탄화수소연료위원회(CNH) 법령
* PEMEX 관련 법령
* 준공공기관 관련 연방법령
*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령
* 기획 관련 법령
* (해당 회계연도를 위한) 연방 세법
* 예산 및 재무건전성 관련 연방법령
* (해당 회계연도를 위한) 연방 지출예산제도
* 석유 부문에 대한 헌법 27조 규제법령의 규정
* 멕시코석유공사(PEMEX) 관련 법령의 규정
* 준공공기관 관련 연방법령의 규정
*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령의 규정
* 예산 및 재무건전성 관련 연방법령의 규정
* 에너지부 내규
* 국가탄화수소연료위원회(CNH)의 내부 규정
* 멕시코석유공사(PEMEX) 기본법
* 멕시코 공적 규범
* PEMEX가 제정한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관련 주요 사업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공표에 동의
* 산업안전의 측면에서 PEMEX 및 그 부속기관의 규정이 완수, 이행, 집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가이드라인이 에너지부에 의해 제정됨을 동의
*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사업 설계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 계약에 관한 행정적 규제
*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작업에서 가스 연소와 방출을 제거 및 감축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

석유산업에 관한 헌법 규정들은 헌법 제25조, 26조, 27조이다. 특히 멕시코 헌법 제27조 제4항은 “석유와 모든 고체, 액체, 기체 탄화수소,

국제법에 규정된 범위와 조건 내의 영공은 국가가 직접 소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6항은 허가권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고,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개인이나 멕시코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해당 자원을 개발, 사용, 도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방정부가 부여한 허가권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국가적인 부를 위한 석유부국으로서의 극대화를 보장하기 위한 멕시코석유산업의 장치들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에너지개혁>과 함께 '석유 부문에 대한 헌법 27조 규제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97] 이러한 방식으로, 본 규제법령에 관한 개혁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들을 갖는다. a) 새로운 매장지의 개발과 매장량 통합 가속화 b) 탄화수소의 국가생산량 감소를 전환 c) 석유 채굴, 특히 심해에서의 원유 채굴에 대한 최신기술 편입 e) 주로 전문기업을 통해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시스템 등, PEMEX의 실제 집행능력의 확대 f) 탄화수소의 생산, 정제, 수송, 저장, 배분 능력 증대 g) 가연성 물질 생산 증대 및 품질 향상 h) 관련 법적 프레임에 명시된 용어에 따라, PEMEX와 석유산업 관련자들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제와 감독 강화 등이다.[98]

Ⅱ. 멕시코의 천연가스규제체계

멕시코의 천연가스산업 규제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99]

97)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10~2025년 멕시코 석유시장 전망보고서」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54면.
98) 앞의 글, 55면.
99)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2025년 멕시코 천연가스시장 전망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48면.

* 멕시코헌법
* 석유산업에 대한 헌법 제27조 규제법
* 연방공공행정 기본법
* 에너지규제위원회법
* 준국가기관연방법
* 행정절차연방법
* 도량형과 표준화에 대한 연방법
* 계획입안법
* 석유산업에 대한 헌법 제27조 규제법 시행령
* 멕시코석유공사법 시행령
* 준국가기관연방법 시행령
* 도량형과 표준화에 대한 연방법 시행령
* 천연가스 시행령
* 멕시코공식표준
* CRE에서 공포한 명령 및 결의안

멕시코에서 천연가스산업과 관련한 헌법 규정은 주로 멕시코헌법 제25, 27, 28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연가스와 관련해 중요한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4항이다. 이에 따르면 “도서지역의 대륙붕과 해저층의 모든 천연자원・광맥・지층・집괴에 있는 모든 광물이나 물질, 공업용 금속과 비금속이 나오는 광물처럼 토양의 구성요소와 자연적으로 구별되는 광상을 이루는 광석층, 보석용 원석・암염・해수로 형성된 소금 퇴적물, 채취하려면 지하작업이 필요한 암석 분해로 나온 산물, 비료로 활용가능한 광물이나 유기층 물질, 고체 광물 연료, 석유와 모든 고체, 액체, 기체 탄화수소, 국제법에 규정된 범위와 조건 내의 영공은 국가가 직접 소유한다.”

석유산업에 대한 헌법 제27조 규제법(LRA27C)은 천연가스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오직 국가만이 석유산업을 구성하는 탄화수소자원들의 다양한 개발을 실행할 수 있다. 석유산업은

다양한 활동 중에서 가스의 탐사, 개발, 가공 및 직접 판매는 물론이고 개발과 가공을 상호연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송 및 저장을 포함한다. 상기 법규 제3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가스의 수송, 저장, 유통은 사전 허가를 통해 사회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이 두 부문은 규제 및 기술 조항과 공포된 규정사항에 의거하여 가스관을 건설하고, 운용하며, 소유주가 될 수 있다.[100]

천연가스산업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에너지부(Sener)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석유 및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모든 탄화수소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집행한다. 에너지부 산하 준국가기관들의 활동과 탄화수소자원의 탐사, 개발, 변형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한다. 법규 및 적용규정에 의거한 개인들의 에너지부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려한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준국가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를 편입한다. 국가에너지전략 범위 내에서 국가의 에너지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확인매장량과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한 Pemex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연간 계획을 연방정부 행정수반에게 제출한다.[101]

이상과 같이 멕시코의 헌법과 법률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있어서 국가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 5 절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의 주요내용

Ⅰ. 에너지규제위원회의 목적과 권한

멕시코에서는 에너지규제위원회가 각종 자원개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대

100)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10~2025년 멕시코 천연가스시장 전망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49면.
101) 앞의 책, 49면.

하여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에너지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에너지규제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기술과 운영, 관리, 결정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제1조). 위원회는 동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서비스 사용자에게 전기에너지 공급 및 판매
2. 전기에너지의 발생 및 수출, 수입
3. 공공서비스 목적의 전기에너지 취득
4. 전기에너지 공급기관과 전기에너지의 발생 및 수출입 사업권자 간의 전기에너지 전도, 변환, 수송
5. 가스와 연료유, 기초석유화학제품의 직접 판매
6. 가스와 석유 및 기초석유화학제품의 정제로 생산된 제품의 수송 및 분배
7. 바이오에너지의 수송 및 분배

그리고 위원회는 동법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전기에너지 공급 및 판매 가격 결정에 참여
2. 전기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분담금 결정을 위한 기준 승인
3. 전기에너지 서비스 기관의 제공 가격과 국가 전력체계의 안정성, 품질, 안전 유지
4. 공공서비스 목적의 전기에너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방식 승인
5. 전기에너지의 전도와 변환, 수송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방식 승인
6. 에너지 부문 사업의 공식화 및 수행에 관한 의견을 에너지부에 제공
7. 연료유와 가스, 기초석유화학제품의 직접 판매 조건의 승인 및 공포

8. 수송과 저장, 분배 서비스 조건의 승인 및 공포
9. 이 법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분배와 활동, 규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의 지리적 결정
10. 이 조의 8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의 비용 계산법 공포
11. 8항에 언급되는 서비스의 유지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에 요청
12.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라 사업권 및 승인의 수여 및 철회
13. 활동에 필요한 협약 및 계약의 모델 승인 및 공포
14. 규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의 행정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
15. 해당 부문의 각종 법적 조치 마련을 에너지부에 제안
16. 규제활동에 관한 명시적 등록
17. 규제활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재자의 역할 수행
18. 공공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 획득 시 안전대책을 취하도록 소관당국에 요청
19. 규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확인 방문 명령, 정보 제공 요청, 필요 시 출두 요청
20. 전기에너지공공서비스법 제40조의 5항과 6항을 위반하는 이에게 행정적 제재 조치
21. 헌법 제27조 석유부문 시행령과 바이오에너지 증진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이에게 안전대책 명령 및 행정적 제재 조치
22. 헌법 제27조 시행령과 기타 규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Ⅱ.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는 규정에 맞게 진행하며 과반수 표결로 안건을 결정한다(제4조). 위

원은 연장행정부의 수장이 에너지부의 제안을 받아 임명한다(제5조). 위원은 매 5년마다 임명되며 임기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시작된다.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는 이 법의 제5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한다(제6조). 위원장은 연방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갖는다.

1. 위원회 업무 조정
2. 내부정책의 시행 및 수행, 감독
3. 위원회의 법적 대리인 역할
4. 위원회 내부 규칙의 승인 고려
5. 사무국장 (Execut4e Secretary)의 임명을 위원회에 제안
6. 위원들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임명 및 해고
7. 위원회의 연예산안 작성
8. 위원회 기능 수행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
9. 기타 법과 규칙 등에서 언급하는 내용(제7조)

이와 같은 권한과 조직에 바탕해 에너지규제위원회는 각종 에너지의 주무부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제 6 절 검 토

멕시코의 원자재개발 법제는 헌법 27조에 기초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광물과 석유・천연가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가 광물에는 허용되어 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업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헌법 제27조가 강하게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에서 광업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에는 외국기업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이후 1991년 4월 헌법 제27조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광업기업이 독자적으로 광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민간이 광업에 전면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약 20년 정도에 불과하다.

광업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자면, 광물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광물업무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주무부처는 경제부이다. 지질조사 지원, 광업촉진, 법적 확실성 확보, 금융 기술 지원 등 정부가 광물산업 지원하기 위한 강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다. 광업권은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에 대해 50년을 보장하며 또 다른 50년의 연장허가가 가능하다. 광업법 제11조에 따라 법인이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은 멕시코 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 자본 참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광업투자가 가능하다.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On the bases of first come first served)하에 방사능 물질을 제외한 모든 광업권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 법체제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 외국 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광업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광업권에 따른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토지사용 및 법인세는 부과하고 있다. 광물로 인한 수익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 허용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광물 투자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멕시코 광업은 자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멕시코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 헌법 제27조와 광업법 규정을 검토했을 때, 한국기업이 멕시코 광업에 투자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멕시코기

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컨소시엄구성이 광업법 제11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쉽게 충족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헌법은 석유에 대해서 국가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은 멕시코국영석유공사(Pemex)만이 수행할 수 있다. 1995년 개정된 석유법(Petroleum Law)은 천연가스 수입, 운송, 저장, 마케팅, 공급을 민간에 개방하였다. 그리고 Pemex의 천연가스 운반 네트워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천연가스의 소매 공급도 민간에 개방되었다.[102] 멕시코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민간의 원자재투자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Multiple Service Contract(MSCs)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여력이 없는 Pemex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MSCs를 이용하여 100%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천연가스 지역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Pemex는 민간이 생산한 가스를 구입한다. 이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3]

멕시코 헌법 제135조는 헌법개정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을 추가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the Congress of the Union)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고, 주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한다(헌법 제135조). 이처럼 헌법개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잦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는 정부의 에너지부분에 대한 예산부족과 민간의 투자 금지 사이에서 적합한 절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헌법현실과 헌법규정이 충돌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분에서의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멕시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102) KOTRA(편),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서울: KOTRA, 2008, 25면.
103) KOTRA(편), 앞의 책, 26면.

제 4 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 1 절 개 관

Ⅰ. 변천과정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장은 특정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910년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 후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이 증가되었고, 외국인투자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었다. 1917년 헌법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1944년 최초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면서 독립된 법률로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멕시코로 유입된 도피자금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고, 이후 규제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의 근본이 되었다.[104)]

이와 같은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시대변화에 맞게 차츰 변하게 된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국내산업과 자원관련 국가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했었다.

멕시코에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된 것은 1965년부터 시작된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105)]의 영향이 크다. 마킬라도라는 1965년 멕시코

104) 김진오,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투자법을 중심으로-",「최신외국법제정보」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특집호, 2012, 14-15면.

105) 마킬라도라 산업은 외국산 원부자재·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상태로 재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태의 산업을 총칭한다. 보세가공산업(In-bound Industry) 또는 쌍둥이공장(Twin Plants)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국경산업화 계획(Border Industralization Program/BIP)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에 의한 국경산업 개발과 이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및 국제수지 개선에 그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다. 초기 마킬라도라 산업은 미국 기업이 노동비용 절약을 위해 제품의 조립라인을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 설치하면서 운영되었는데, NAFTA 체결 이후에는 미국 기업 외에도 대미수출을 꾀하는 유럽, 아시아 기업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106] 그러나 1982년 외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은 후 외자도입이 어렵게 되자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9년 5월 16일 1973년 외국인투자법의 시행령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각종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 멕시코 경제에 대해 자유시장적 접근방법을 반영하였다.[107] 이로써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제한과 금지에서 개방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108] 하지만 1989년 시행령은 헌법뿐만 아니라 1973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과 충돌된다는 비판을 받았다.[109] 외국인투자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1993년 신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불식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체계의 변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110]

---

106) KOTRA(편), 앞의 책, 16면.

107) 문준조,「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 중국・필리핀・멕시코・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93면.

108) KOTRA(편), 앞의 책, 17면에 따르면 "1998년 9월 8일 개정 외국인투자법의 하위규정인 '외국인투자 국내등록 및 외국인투자 시행령(RLIE: 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y del Registo Nacional de Inversiónes Extranjera)'이 관보에 게재되어 1998년 10월 8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시행령으로 멕시코 투자관련 기관들의 자유재량권이 줄어들고 외국인투자절차가 명료화, 간소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국내등록 및 외국인투자 시행령'이 외국인투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법률만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09) 문준조, 앞의 책, 97면.

110) KOTRA(편), 앞의 책, 18면 내용 일부 수정보완.

- 1917년 멕시코 헌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초 골격 및 정책 규정
- 1965년 멕시코 국경산업화 계획 :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근거 마련
- 1973년 외국인투자법(1989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으로 사실상 대체)
- 1973년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Law)
- 1976년 발명 및 상표에 관한 법(Law on Inventions and Trademarks)
- 1983년 마킬라도라 법령(Maquiladora Decree)
- 1989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1993년 12월 외국인투자법으로 대체)
- 1989년 신마킬라도라 법령
- 1993년 신외국인투자법
- 1996년 외국인투자법 일부 개정
- 1998년 마킬라도라 법령 일부 개정
- 1998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정(1989년 5월의 시행령 폐기)
- 2001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축소
- 2006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축소
- 2008년 외국인투자법 일부 개정

Ⅱ. 멕시코 외국인 투자의 특징

멕시코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주된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111] 우선 다국적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대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44%로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미국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NAFTA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진출이 활발한 형국이다. 금융・보험, 부동산중개업, 방송통신, 숙박・요식업의 비중은 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관광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숙박・요식업에 대한 투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450% 급성장하였다.

111) 안성희, 앞의 글, 46면.

또한 2011년 멕시코의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전체 투자의 56.4%가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 북동부 산업의 중심지인 누에보레온 주(州)에 대한 투자가 11.0%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도인 톨루카 시를 비롯해 많은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주(州)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 2 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Ⅰ.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외국인투자법은 총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신탁 개발・회사・외국법인의 투자・중립투자・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국가외국인투자등록사무소・벌칙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외국인투자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 1 편 총칙
- 제 1 장 목적
- 제 2 장 활동 제한 영역
- 제 3 장 특정 법규로 부여되는 활동 및 권리취득

제 2 편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신탁 개발
- 제 1 장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개발
- 제 2 장 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신탁

제 3 편 회 사

제 4 편 외국법인의 투자

제 5 편 중립투자
- 제 1 장 중립투자의 개념
- 제 2 장 신탁기관의 발행증서로 표시된 중립투자
- 제 3 장 특별계열의 주식으로 표시된 중립투자
- 제 4 장 금융그룹 지주회사, 종합금융기관, 증권회사에 대한 중립투자

제 6 편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제 1 장 위원회의 조직구조
제 2 장 위원회의 권한
제 3 장 위원회의 운영
제 7 편 국가외국인투자등록사무소
제 8 편 벌 칙

Ⅱ. 총 칙

1. 목 적

외국인투자법은 다음과 같이 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다. “동법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전국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며, 외국인투자를 국내에 유치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촉진하는 제반 규칙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인투자법 제1조).” 멕시코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법이 모든 주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동법 제2조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위원회: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B. 외국인투자:
  a)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멕시코 회사의 자본금에 참여하는 일
  b) 외국인의 자본이 과반수인 멕시코 회사에 의해 실현된 투자
  c) 본법에 의해 검토된 활동 및 행위에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
C. 외국인투자자: 멕시코국적과 다른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기타 법인격 없는 외국 단체

D. 등록소: 국가외국인투자등록사무소

E. 부: 상공부

F. 제한구역: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27조 제I호에 기술된 국경 100킬로미터, 해안선 50킬로미터의 영토지대

G. 외국인배제조항: 정관을 구성하는 명시적인 협약이나 협정으로,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허용규정을 가진 회사는 직간접적인 출자자나 주주로 승인하지 않음을 선언한 규정(동법 제2조)

그리고 본법은 영주권자의 조건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의 투자를 멕시코인의 투자와 동등하게 본다. 다만 본법 제1편, 제2편에 열거된 활동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조). 영주권자의 투자는 내국인의 투자와 동일하게 보지만, '제1편 총칙과 제2편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신탁 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의 투자가 내국인의 투자와 동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분 비율에 관계없는 멕시코 회사의 자본금 참여, 자산 취득, 신규 경제활동 진입이나 생산라인 제조, 시설 개설 및 운영 기존 설비 확장 및 재배치에 사용될 수 있다. 본법에 열거된 금융 분야 활동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참여 규정은 해당 활동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바와는 별도로 적용이 된다.최고참여한도가 설정된 경제활동에 대해 투여되는 외국인투자지분의 산정에는 멕시코 자본이 과반수인 멕시코 회사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실현된 외국인투자는 고려하지 아니하며, 해당 회사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와는 무관한 경영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동법 제4조).

2. 제한영역

외국인투자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전략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의 독점적 운영권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분야는 “원유 생산 및 정유, 기초석유화학, 전력,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광물, 전신, 무선통신, 우편,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항구・공항・헬기장의 관제・감독・감시, 기타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적시한 영역(제5조)”이다.

따라서 ‘석유 및 기타 탄화수소류, 기초석유화학, 전력, 원자력발전, 방사성광물’과 관련된 원자재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의 독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는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멕시코 국민 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없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A. 택배 및 포장 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이동을 위한 여객, 관광, 화물의 지상 운송업
B. 휘발유 소매 및 석유액화가스의 유통
C. 방송서비스 및 케이블 TV를 제외한 라디오 및 TV 방송
E. 관련 법률로 정한 개발금융기관
F.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적시한 전문적 기술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는 본조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활동 및 회사에 대하여 신탁, 협약, 회사 및 정관의 협정, 피라미드 방식, 기타 통제 및 일정 형태의 참여가 허용되는 여하한 체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본법 제5편에 규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3. 법률상 부여되는 권리취득

외국인투자법 제7조는 외국인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 및 회사 지분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10% 까지: 생산협동조합(합작회사)

B. 25% 까지: a) 국내항공운송, b) 항공택시 운송, c) 전문항공운송

C. 49% 까지:

e) 보험기관, f) 보증기관, g) 환전소, h) 보관용 창고 일반, l) 유가증권시장법 제12조에 기술된 회사, o) 퇴직연금 운용회사, p) 산업활동 및 추출을 위한 폭발물의 취득, 활용 및 동일 활동의 소비를 위한 폭발혼합물 가공을 제외한 폭발물, 화기, 탄약통, 군수품, 폭죽의 제조 및 판매, q) 국내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발간, r) 농지, 축산단지, 임지를 재산으로 가진 회사의 계열 주식, s) 양식업을 제외한 담수 및 연안, 배타경제지역에서의 어업, t) 항구종합관리, u)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의 내해 항해를 돕기 위한 도선 서비스, v) 내해 항해 및 연안교역에 사용되는 선박의 상업적 이용을 업종으로 하는 해운회사. 다만, 관광유람선, 준설선 및 항구의 건설, 보존 운용에 사용되는 소형선박의 이용은 예외로 한다, w) 선박, 대형항공기, 철도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x) 연방통신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기술된 영업권 수탁회사

본조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참여의 한도는 직접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신탁, 협약, 회사 및 정관 협정, 피라미드 방식, 기타의 통제 및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지분의 참여가 허용되는 여하한 체제를 통해서도 상회할 수 없다. 다만, 본법 제5편에 규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외국인투자가 경제활동 및 회사 지분의 49% 이상을 참여하기 위해 위원회의 허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8조).

A. 선박 국내운항・예항・정박・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B. 원양어선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C. 공공서비스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영업권 수탁회사 및 인가회사, D. 취학전,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육 및

그 이상의 복합교육기관, E. 법률서비스, F. 신용정보회사, G. 유가증권 평가기관, H. 보험중개인, I. 이동통신, J. 석유 및 그 파생물을 운반하기위한 도관 공사, K.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L. 통신 및 대중이 이용하는 철도교통서비스의 일반 선로가 되는 철로의 건설, 운영, 경영

외국인투자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이 '석유 및 그 파생물을 운반하기위한 도관의 건설, 유정 및 가스정 시추'와 관련된 경제활동 참여 및 회사지분의 취득에 있어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가 멕시코 회사 자본금 지분 49%이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그에 대한 취득신청서를 제출할 시점의 해당 회사 자산총액이 위원회가 매년 설정한 금액을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있어야 한다(제9조).

<표 8> 외국인투자의 제한 범위

국가의 독점분야	멕시코인 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멕시코법인의 독점분야	외국인투자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정부 승인하에 외국인투자가 49% 이상 허용되는 분야
- 원유 생산 및 정유 - 기초석유화학 - 전력 -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광물 - 전신 - 무선통신 - 우편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공항· 헬기장의 관제·	- 택배 및 포장 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이동을 위한 여객, 관광, 화물의 지상 운송업 - 휘발유 소매 및 석유액화가스의 유통 - 방송서비스 및 케이블 TV를 제외한 라디오 및 TV 방송	- 10% 까지: 생산협동조합(합작회사) - 25% 까지: a) 국내항공운송, b) 항공택시 운송, c) 전문항공운송 - 49% 까지: · 보험기관, 보증기관, 환전소, 보관용 창고 일반, 유가증권시장법 제	- 선박 국내운항 · 예항 · 정박 ·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선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 공공서비스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영업권 수탁회사 및 인가회사

국가의 독점분야	멕시코인 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멕시코법인의 독점분야	외국인투자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정부 승인하에 외국인투자가 49% 이상 허용되는 분야
감독·감시, 기타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적시한 영역	- 관련 법률로 정한 개발금융기관 -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적시한 전문적 기술서비스 제공	12조에 기술된 회사, 퇴직연금 운용회사, 산업활동 및 추출을 위한 폭발물의 취득, 활용 및 동일 활동의 소비를 위한 폭발혼합물 가공을 제외한 폭발물, 화기, 탄약통, 군수품, 폭죽의 제조 및 판매, 국내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발간, 농지, 축산단지, 임지를 재산으로 가진 회사의 계열주식, 양식업을 제외한 담수 및 연안, 배타경제지역에서의 어업, 항구종합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의 내해 항해를 돕기 위한 도선 서비스, 내해 항해 및 연안교	- 취학전,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육 및 그 이상의 복합교육기관 - 법률서비스 - 신용정보회사 - 유가증권평가기관 - 보험중개인 - 이동통신 - 석유 및 그 파생물을 운반하기 위한 도관 공사 -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 통신 및 대중이 이용하는 철도교통서비스의 일반 선로가 되는 철로의 건설, 운영, 경영

국가의 독점분야	멕시코인 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멕시코법인의 독점분야	외국인투자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정부 승인하에 외국인투자가 49% 이상 허용되는 분야
		역에 사용되는 선박의 상업적 이용을 업종으로 하는 해운회사. 다만, 관광유람선, 준설선 및 항구의 건설, 보존 운용에 사용되는 소형선박의 이용은 예외로 한다, 선박, 대형항공기, 철도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연방통신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기술된 영업권 수탁회사	

Ⅲ.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신탁개발

1.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개발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27조 제I호에 따라, 외국인배제조항을 보유하거나 해당규정이 삽입된 협약을 체결한 멕시코 회사는 멕시코영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I호에 규정된

협약이 정관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 따라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당사자는 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비주거활동 목적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외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B. 제한구역내의 주거목적 부동산에 대한 제반 권리 취득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외국인투자법 제10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한 구역외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멕시코 영역 내에서 광물 및 수자원의 채굴, 운영을 위한 채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27조 제I호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외교부에 사전에 제출하여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0A조 제1항).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온전히 제한구역 밖의 행정구역에 속하거나 멕시코영역 내에의 광산, 수자원 경영을 위한 채굴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0일 이내에 연방정부의 거부처분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0A조 제2항).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제한구역과 부분적으로 영역을 공유하는 행정구역인 경우, 외교부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련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립통계지리정보과학연구소는 제한구역 내에 완전히 포함된 행정구역 및 경계를 접하는 지역의 목록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최신 정보로 갱신된 상태로 유지한다(동법 제10A조 제3항). 외교부는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일반 협정을 통해, 외국인이 본조에 기술된 권리의 취득을 위해 해당부서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7조 제I호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의 전제를 규정할 수 있다(동법 제10A조 제4항).

2. 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신탁

신용기관이 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설정이 없는 수탁자로서 위탁자의 부동산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신탁의 목적으로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된 위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11조).

A. 외국인배제조항 없이 본법 제10조 제II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멕시코 회사, B.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사용 및 활용은 동 부동산의 사용 및 향유를 위한 권리로 보며, 그 과실, 산물의 취득 및 제3자 또는 수탁기관을 통한 영리활동으로 얻는 각종 수익 일반을 포함한다(동법 제12조). 본장에 기술된 신탁의 유효기간은 최대 50년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외교부는 언제든지 본장에 예정된 허가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정된 통지의 제출 여부 및 그 진위를 살펴볼 수 있다(동법 제13조)..

외교부는 본장에 기술된 허가에 대하여, 이들 활동의 실현이 국가를 위해 내포하는 경제사회적 이점을 고려하여 처분한다. 모든 허가신청서는 관장 중앙행정기구에 제출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해당 부서의 주 사무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0일 안에 외교부가 처분되어야 한다. 해당기간이 처분의 발령 없이 만료되면 관련 신청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14조).

Ⅳ. 회 사

경제부는 회사를 설립중인 회사의 상호 및 법인명의 사용을 승인한다. 설립될 회사의 정관에는 외국인배제조항 또는 헌법 제27조 제I호에 규정된 협약에 대한 언급이 삽입되어야 한다(동법 제15조). 전조에 기술된 절차는 상호나 법인명을 변경한 기존 설립회사에 적용된다.

외국인배제조항을 외국인허용조항으로 개정하는 회사는 해당 개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 회사들이 제한구역내의 비주거 목적 부동산의 소유주인 경우에는, 전 단락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본법 제10조 제I호에 기술된 통보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기술된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경제부에 의해 처분되어야 한다(동법 제16A조).

Ⅴ. 외국법인의 투자

멕시코가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협약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 승인을 받아야할 이들의 명단의 다음과 같다.

A. 공화국내에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외국 법인, B. 민법(통칙 연방자치구 적용, 연방규칙 전국 적용) 제2736조에 기술된 법인으로 공화국에서 설립되기를 희망하면서 상기 법률 외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경우(동법 제17조)

전조에 기술된 승인이 부여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관련 법인이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증명할 것, b) 회사 계약 및 기타 법인의 설립문서가 멕시코 법률에 규정된 공공질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 c) 전조 제I호에 기술된 법인의 경우, 공화국에서 설립되거나 대리점, 지사가 있을 것. 전조 제II호의 경우, 관련 의무의 응답을 위해 승인되어 영업소가 될 장소에 주소를 둔 대표자가 있을 것.

상기 요건의 충족하는 모든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분이 부여되어야 한다. 해당기간이 처분의 발령 없이 만료하면, 신청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는 신청서 및 본조에 근거하여 부여된 승인서 사본 1부를 외교부에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7A조).

Ⅵ. 중립투자

중립투자는 외국인투자법 5편의 규정으로 승인된 멕시코 회사나 신탁기관에 실현된 투자를 말한다. 이 때 멕시코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결정하는데 산정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8조).

부는 회사에 대하여 금전적 권리, 정기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이 없는 제한된 회사의 권리만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수탁기관의 투자증서 발행을 승인할 수 있다. 부는 관련 신청서의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5일을 한도로 그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당기간이 처분의 발령 없이 만료하면, 신청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19조).

투표권 없이 제한된 회사의 권리만이 부여된 주식은 중립투자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부 및 경우에 따라, 국가은행증권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는 관련 신청서의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5일을 한도로 그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당기간이 처분의 발령 없이 만료하면, 신청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20조).

위원회는 국제개발금융회사가 회사의 자본금에 실현하려는 중립투자에 대하여 본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Ⅶ.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1. 위원회의 조직구조

위원회는 내무부, 외교부, 재정공공신용부, 사회발전부, 환경자연자원수산부, 에너지부, 상공부, 통신교통부, 노동사회보장부 및 관광부의

장관들로 구성되며, 구성원이 되는 장관들은 각자 자신의 업무를 대행할 차관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간당국 및 대표를 초청하여 관련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초청된 참석자들은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소 연 2회 소집되어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장 분야 사안들을 표결하며, 개표결과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동법 제23조).

위원회의 의장직은 상공부장관이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비서관 및 대표협의회를 둔다(동법 제24조). 대표협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의 각 부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동법 제25조).

2. 위원회의 권한

외국인투자법 제26조는 위원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지침 수립 및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체제의 입안, B. 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특정 규정의 활동이나 취득으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참여의 근거 및 조건에 대한 처분권 행사, C. 연방행정부서 및 기관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필수적 자문기구 역할 수행, D. 일반처분의 발령을 통한 외국인투자 법규 적용을 위한 기준 설정, E. 기타 본법에 따라 부여된 제반 권한

외국인투자법 제27조는 위원회 행정비서관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위원회의 대표권 행사, B. 부를 통한 위원회의 처분 통보, C. 위원회가 위탁하는 연구 실시, D. 위원회에 4개월 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의 움직임 및 투입된 경제 분야 지역을 포함한 통계보고서 제출, E. 기타 본법에 따라 부여된 제반 권한

3.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을 요하는 신청에 대하여 관련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5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상기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는 승인된 것으로 단주한다. 이해관계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는 관련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외국인투자법 제29조는 위원회의 판단을 원하는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고려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근로자의 고용 및 육성에 미치는 영향, B. 기술적 공헌도, C. 생태 관련 법률에 담겨진 환경 규정의 이행 여부, D. 국내 생산 공장의 경쟁력 증대에 대한 공헌 일반

위원회는 신청 근거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국제통상을 왜곡시키지 않는 요건만을 부여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위원회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로 인한 취득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Ⅷ. 국가외국인투자등록사무소

등록소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조직편제 및 등록부에 제공되는 정보의 기재규정을 근거로 세분되어 관리된다(동법 제31조).

외국인투자법 제32조는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신탁이 매개체가 된 것을 포함한 참여 멕시코 회사의 명단
   a) 외국인투자, b)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멕시코인으로 멕시코 영역 밖에 주소를 둔 이, c) 중립투자
B. 멕시코공화국내에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
   a)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 및 법인, b)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멕시코인으로 멕시코 영역 밖에 주소를 둔 이

C. 외국인투자 및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멕시코인으로 멕시코영역의 밖에 주소를 둔 이들을 위하여 권리가 파생되는 주식, 회사 지분, 부동산, 중립투자의 신탁

등록의 의무는 제A호 및 제B호에 기술된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제C호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있다. 등록은 회사의 설립 또는 외국회사의 외국인투자 참여 관련서류의 공식작성 및 공증, 관련 신탁이나 외국인투자를 위한 위탁자의 권리 부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4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동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명원을 발급한다.

A. 제A호 및 제B호의 전제조건

a) 성명, 상호 및 법인명, 주소, 설립일, 주요 경제활동 예정 분야, b) 법적 대표의 성명 및 주소, c) 통보 청취 및 수신을 위해 승인된 이들의 성명 및 주소, d) 외국인투자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명, 국적, 거주조건, 국내외 주소 및 참여 지분, e) 인수, 납입되었거나 인수, 납입 예정인 회사자본금, f) 영업개시예정일 및 일정표로 표시된 대강의 총투자금액

B. 제C호의 전제조건

a) 수탁기관의 명칭, b)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위탁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명, 주소, 국적, c)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위탁자로 지정된 이들의 성명, 상호 및 법인명, 주소, 국적, d) 신탁의 설정일, 목적 및 유효기간, e) 수탁재산에 대한 기술 및 가치, 용도, 소재지

등록 및 갱신증명원이 발급되면, 등록소는 제출된 정보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소에 보고되어야 한다(동법 제33조).

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부 등록 의무가 있는 상사회사 및 비영리 법인의 설립, 정관 개정, 조직 변경, 스스로 행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모든 행위 및 법률 사실 전반에 대하여, 공증인은 해당 법인 및 그 대리인에게 등록소 등록을 인증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등록이 수속중인 경우에도 관련 신청서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증인은 대상 공문서를 승인하고, 문서승인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련 누락사실을 등록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등록부 등록 의무의 주체는 매년 등록증명원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한 경제재정질문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동법 제35조).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당국은 보고서 및 본법과 그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증명원을 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35조).

제 3 절 회사법의 주요내용

Ⅰ. 개 관

멕시코에서 원자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멕시코에서의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회사형 합작투자(Corporate Joint Venture)형식이다. 이는 멕시코 현지 투자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멕시코에서의 원자재개발을 위해 한국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멕시코 회사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112)]

112) 멕시코 회사법의 주요내용은 이준표, "멕시코의 투자관련 법제 개관 -회사법을 중심으로",「최신외국법제정보」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특집호, 2012, 5면-11면.

Ⅱ. 회사법의 구성

멕시코 회사법은 총 14장 26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법 제1조는 회사법상 인정되는 기업형태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명회사(Sociedad en Nombre Colectivo; S.N.C.),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S. en C), 주식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S. en C. Por A), 유한회사(Sociedad de Resposabilidad Limitida; S.de R.L), 주식회사(Sociedad Anomima; S.A.), 협동조합(Sociedad Cooperativa; S.C.)이다(회사법 제1조).

멕시코 회사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 회사법의 구성>

제 1 장 총 칙(제1조-제24조)
제 2 장 합명회사(제25조-제50조)
제 3 장 합자회사(제51조-제57조)
제 4 장 유한회사(제58조-제86조)
제 5 장 주식회사(제87조-제206조)
제 6 장 주식합자회사(제207조-제211조)
제 7 장 협동조합(제212조)
제 8 장 가변자본회사(제213조-제221조)
제 9 장 회사의 합병, 이전, 분할(제222조-제228조)
제10장 회사의 해산(제229조-제233조)
제11장 회사의 청산(제234조-제249조)
제12장 외국회사(제250조-제251조)
제13장 이윤분배계약(제252조-제259조)
제14장 회사의 등기(제260조-제264조)

Ⅲ. 회사의 설립과 운영

멕시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로서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동법 제87조). 따라서 주식회사의 특징은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이다.

주주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이 1주 이상 보유한다. 최소설립자본금은 50,000페소이며, 설립시 최소 20%가 납입되어야 한다(동법 제89조). 주식회사의 주식은 공개모집이 가능하며(동법 제92조), 모든 주식은 1년 이내에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동법 제97조).

멕시코 회사법상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1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는 주주 중에서 선임될 수도 있고,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동법 제142조).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이다(동법 제178조). 주주총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이는 반드시 회사의 주소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동법 제179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 내지 이사회이며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동법 제183조). 이사가 2인 이상 선임될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한다(동법 제143조). 감사는 주식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1인 이상 선임된다(동법 제164조).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동법 제25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나머지 총 사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동법 제31조). 사원의 사망시 회사가 그 승계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상 정해야 한다(동법 제32조). 합명회사의 정관

은 총 사원의 만장일치의 동의로써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상 다수결의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동법 제34조).

합명회사의 운영은 1인 대표가 책임진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동법 제35조・제36조). 또한 대표의 임명과 해임은 사원투표에 따르며, 이는 다수결에 의한다(동법 제37조). 회사 대표의 결정은 다수결의 결의로 승인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사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동법 제45조).

유한회사란 주식회사의 주주와 대비되는 사원들로 구성되는데, 사원들은 이 사원들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이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동법 제61조), 초기 자본금이 3,000페소[113] 이상으로, 설립시 출자금액이 50%가 납부되어야 한다(동법 제62조・제64조).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분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동법 제65조-제67조).

회사경영을 위해 1인 이상의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고,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이 참여하는 유한회사의 최고사결정기구이며(동법 제78조),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자금액 50% 이상이 참석하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원총회는 정관상 정한 시기에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동법 제80조).

멕시코 회사법상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동법 제51조).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주주로 구성된다. 두 회사 모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한다(동법 제55조).

113) 한화 기준 약 25만원 정도이다.

Ⅳ. 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의 해산사유는 기간 만료, 회사목적을 계속 추구하며 운영하기 불가능한 경우,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의 결의를 거친 경우, 멕시코 회사법에서 정한 최소주주의 수에 미달한 경우, 회사자본의 3분의 2 이상을 손실한 경우 등이다(동법 제229조) 해산시 회사는 청산절차를 따라야 한다(동법 제234조). 청산절차는 1인 이상의 청산인에게 맡겨져야 하며, 회사의 법률상 대표일 것을 요한다(동법 제235조).

제 4 절 노동법의 주요내용

Ⅰ. 개 관

멕시코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은 1970년 4월 공포 이후 1998년과 2006년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시행중인 노동법은 2012년 4월 9일에 최종 개정되어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와 권익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자재 개발과 노동법은 연관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이 원자재 개발 사업에 진출해 현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노무관리는 경영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더욱이 광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무관리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4] 따라서 멕시코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114) KOTRA,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08, 364면에 따르면 “2007년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지 진출한 145개사가 고용하고 있는 멕시코국적 직원은 31,851명으로 나타났고 현지진출기업 50개사를 통해 현지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노무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 등 노무관리는 멕시코 진출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멕시코진출기업이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멕시코노동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근로계약의 기간과 해지

근로계약은 사업을 위해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계약상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노동법 제35조). 근로의 특성상 요구되거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기타 연방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계약 기간을 정한다(동법 제37조). 이와 같은 노동법 규정은 일시적・임시적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를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법 제47조는 해고가 정당화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근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가짜 증명서나 신원 보증서로 사용자를 속인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 그의 가족,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 인사 담당자에게 거짓정보 제공, 불미스러운 행동, 폭력, 위협 혹은 학대를 가한 경우. 단, 화를 나게 만들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는 예외
- 근로자가 상기 항에 언급된 행동을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여 직장 내의 규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일로서 제2항의 행위를 범하여, 고용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건물, 작업도구, 원자재, 기타 사물들에 피해를 가한 경우
- 부당한 의도는 아니지만 피해의 유일한 원인으로서 부주의로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로 회사 내의 안전과 직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나 작업장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범한 경우
-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기밀이나 극비 사항을 타인에게 알린 경우
- 사용자의 허락 또는 충분한 사유 없이 30일의 기간 중 3번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충분한 사유 없이 사용자나 상관의 말에 불복종한 경우
- 근로자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설 정해 놓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만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로 출근한 경우
-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고형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노동법 제51조는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근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사용자측이 고용 조건을 속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용자, 사용자의 가족, 최고 경영인,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 대해 부정이나 불미스러운 행동, 폭력, 위협, 학대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
- 업무 이외의 일로 위 항의 행위가 발생하여 고용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급여를 감봉한 경우
- 근로자가 관례 혹은 합의에 따라 고정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받아야 할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의 비품이나 도구들을 파손한 경우
- 사업장의 미흡한 위생 상태나 법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위배하여 근로자의 혹은 그의 가족의 안전이나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
- 사용자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로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 상기 항목들과 유사한 이유들로서 중차대하고 근무에 비슷한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
-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통지문을 근로자와 해당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충분한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노동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고용관계를 중단할 수 있고,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당 해고로 판정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복직 및 3개월 치 급료와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로 중재재정이 처리된 날까지의 체불 임금이다.[115)]

Ⅲ. 미성년자와 여성의 근로 보호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의 근로는 근로감독국(Inspeccion del Trabajo)의 감독 및 특별보호 대상으로 한다(동법 제173조).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는 근로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certificado medico)를 받아야 하며 근로감독국의 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74조). 16세 미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최대 3시간 단위로 나뉘어야 한다. 근무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동법제177조). 16세 미만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일요일 및 의무휴일에 근로를 할 수 없다(동법 제178조). 16세 미만 근로자는 연중 최소 18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제179조)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164조).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즉, 임신이나 수유기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이나 산업체 야간근무, 상업 또는 서비스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다(제166조).

제170조에서 규정하는 여성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보건 상 위험한 일을 할 수 없다.

②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6주의 휴가를 가진다.

115) KOTRA,「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08, 182-183면.

③ ②에 명시된 휴가기간은 임신이나 출산의 사유로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유기의 여성은 수유를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위생적인 장소에서 하루 두 차례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⑤ ②에 명시된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수령한다. ③에 언급된 기간연장의 경우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수령한다.
⑥ 과거에 종사했던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⑦ 출산 전·후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Ⅳ. 휴가와 수당

근로자는 6일마다 최소 1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제69조). 근로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제73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가진다. 휴가기간은 근무일 6일 이상이어야 하며 12일이 될 때까지 매년 2일씩 늘어난다. 12일이 되는 해부터는 5년마다 2일씩 늘어난다(제76조). 근로자들은 최소 연속 6일간 휴가를 가진다(제78조).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9조).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일수당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근무수당 이 법에 따라 일주일 중 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평일 임금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제71조).

Ⅴ. 임금과 최저임금

임금은 시간이나 사업, 임무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사업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을 명시하며 사용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제공하는 물품의 양과 질, 장비 및 도구의 상태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제83조). 임금은 일단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수당, 주택제공, 보너스, 수수료, 현물 및 다른 형태로 종업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성된다(제8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최저금액을 말한다.[116] 최저임금은 물질・사회・문화적인 측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통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녀의 의무교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제90조).

Ⅵ.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한 시간을 말한다(제58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정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로시간을 정한다(제59조). 주간근로는 6시와 20시 사이에 포함되며, 야간근로는 20시부터 6시 사이에 포함된다(제60조).

주야간혼합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을 3시간 30분미만으로 하며, 3시간 30분을 초과하면 야근근로에 해당한다(제60조). 최대근로시간은 주간과 야간, 주야간혼합근로 각각 8시간과 7시간, 7시간 30분으로 한다(제61조). 근로시간 동안 근로자에게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한다(제63조).

116) KOTRA, 앞의 책, 187-188면에 따르면 멕시코는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현재 A, B, C 세 지역으로 나누어 일당 최저임금을 각각 50.57페소, 49.00페소, 47.60페소를 지급하고 있다(2007년 기준).

근로시간은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일일 3시간, 주간 3차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제66조). 예외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제67조).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획 및 프로그램에 맞추어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할 권리가 있다(제153조의A). 교육 및 훈련은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의 특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른 방식에 동의하면 근로시간 외에 제공될 수 있다(제153조의E).

제 5 절 검 토

멕시코는 1970년 말까지 지속해 온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이 실패하고, 1982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방송・통신, 광업, 수산업, 철강업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를 단행했다.[117] 이 과정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을 시작했다. 1990년대에 외국인투자는 더욱 확대되었고,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은 이와 같은 과정의 절정이라고 평가할 법하다.[118]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의 개선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져왔다. NAFTA의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는 투자요건의 완화와 시장개방의 확대가 적극적이지만, NAFTA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편이다.[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정부는 1993년 투자법 제정과 이후 수많은 개정을 통해 멕시코에 호의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

117) 김진오,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투자법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특집호, 2012, 13면.

118) 하상섭, "한・멕시코 일반투자 현황과 멕시코 투자법의 발전과 한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8, 13면.

119) 문준조,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중국・필리핀・멕시코・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185면.

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1993년 외국인투자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일정부분 제한하여 멕시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 및 내국인 독점업종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한적으로 지분 참여가 허용되는 업종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이행해야하는 의무와 법률 및 시행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분제한 투자업종에 은행업, 보험, 연기금, 증권업 등 금융 산업 대부분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투자개방이 이루어질 업종은 전력과 석유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분야의 수급 불균형, 공공투자 부족, 개발기술의 낙후문제 등이 개방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120]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의 제도 발전은 멕시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한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 원자재개발 영역의 확대는 외국인투자법의 개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법의 변화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120) 김진오, 앞의 글, 21면.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멕시코 원자재개발의 필요성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고, 석유생산 세계 1위, 은 생산 세계 1위일 정도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국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은 매력적인 對멕시코 투자요인이다. 2011년말 기준 對멕시코 무역규모는 약 120억 달러에 이르는데, 수출이 약 97억 달러이고 수입이 약 23억 달러이므로 한국이 약 74억 달러 흑자인 상황이다. 한국은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자동차 부품, 칼라TV 등의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 수입품목은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원자재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멕시코의 특성과 한국과 멕시코의 무역 규모와 내용을 감안할 때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은 한국 입장에서 대단히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원자재개발관련법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멕시코광업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체 국토 매장지역의 20%만 채굴이 이뤄지고 있어 아직 원자재 개발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생산광물 중 은을 비롯한 17개 광물이 세계생산량 10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다양한 광물이 상당량 매장돼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국제 광물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광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121] 게다가 광물 투자가 매력적인 점은 투자광산의 생산지분이 한국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利點)이 있다.[122]

121) 황정한, "멕시코 광업, 외국인 투자 활발", KOTRA, 경제/산업동향, 2007.5.30일자.
122) 외교통상부・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자원개발의 이해」, 에너지 협력외교 자

제 2 절 법제상의 시사점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관련법제는 헌법 제27조과 이를 구체화한 각종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 중 대표적인 법률로는 광업법이 있다. 멕시코에서 원자재 개발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소유원칙 - 외국인소유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토지와 강을 비롯해 각종 자원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에 속하되, 국가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내국인과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멕시코헌법의 입장은 1917년 현행 헌법 제정이후부터 일관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멕시코혁명이 일어난 이후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외국인투자를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1917년 헌법은 토지의 국가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토지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1925년 중앙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정책 국가 장악과 1938년 석유산업 국유화 등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멕시코에서 개방 및 자유화정책이 시도되었고,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로 이어져서 1993년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개정하게 되었다.[123] 외국인투자법은 제1편 제2～3장 제5～9조는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부문을 제외한 투자금지 부문, 외국인 지분 취득한도 제한 부문, 그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부문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헌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법 제5조는 원유 생산 및 정유, 기초석유화학, 전력,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광물, 전신, 무선통신, 우편,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항구・

료집, 2008, 133면.

123) 2008년 최종 개정되었다.

공항・헬기장의 관제・감독・감시, 기타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적시한 영역 등 전략사업을 국가독점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7조는 외국인투자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활동 및 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협동조합에는 최대 10% 지분참여 허용되고, 국내 항공운송・항공택시・전문 항공 운송업에는 최대 25%까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기관, 보증기관, 환전소, 보관용 창고 일반, 유가증권시장법 제12조에 기술된 회사, 퇴직연금 운용회사, 산업 활동 및 추출을 위한 폭발물의 취득, 활용 및 동일 활동의 소비를 위한 폭발혼합물 가공을 제외한 폭발물, 화기, 탄약통, 군수품, 폭죽의 제조 및 판매, 국내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발간, 농지, 축산단지, 임지를 재산으로 가진 회사의 계열 주식, 양식업을 제외한 담수 및 연안, 배타경제지역에서의 어업, 항구종합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의 내해 항해를 돕기 위한 도선 서비스, 내해 항해 및 연안교역에 사용되는 선박의 상업적 이용을 업종으로 하는 해운회사. 다만, 관광유람선, 준설선 및 항구의 건설, 보존 운용에 사용되는 소형선박의 이용은 예외로 한다, 선박, 대형항공기, 철도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연방통신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기술된 영업권 수탁회사 등에는 최대 49%까지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그리고 제8조는 CNIE의 승인으로 49% 이상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경제활동 및 기업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 국내운항・예항・정박・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원양어선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공공서비스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영업권 수탁회사 및 인가회사, 취학전,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육 및 그 이상의 복합교육기관, 법률서비스, 신용정보회사, 유가증권평가기관, 보험중개인, 이동통신, 석유 및 그 파생물을 운반하기위한 도관 공사,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통신 및 대중이 이용하는 철도교통서비스의 일반 선로가 되는 철로의 건설, 운영, 경영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멕시코에서의 원자재개발은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강하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원자재개발관련법제만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업분야와 원유 및 천연가스분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광업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다. 1991년 헌법 제27조의 부분적인 개정으로 국가의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짐으로써 광업기업이 독자적으로 광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광업법은 법인의 광업권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고, 외국인이 법인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과 연관지어 보아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의 내용을 보면,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능하다. 석유 및 석유 파생물 수송도관 건설,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등에 있어서는 CNIE의 승인이 있을 경우 49% 이상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다만 MSCs프로그램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등에 우회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지점이다.

한편,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헌법 제27조 제9항 제18호의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1876년 이후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의 토지・강・천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전 정부의 모든 계약과 허가권은 변경이 가능하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계약과 허가권이 공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제18호).

즉, 헌법은 멕시코 정부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와 체결했던 각종 독점권을 공익상의 이유로 사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에 해를 끼친다'에 관한 판단은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재량권에 가깝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원개발에 관한 독점적인 개발허가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교체, 정치지형의 변화, 경제정책기조의 전환 등 투자 외적 요건에 따라서 자원개발권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 3 절 멕시코와의 원자재개발 협력 방향

따라서 한국이 멕시코 원자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경제적 수단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중남미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도 보장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중남미 1위, 세계 4위의 광물탐사 투자유치국이고, 세계 광물회사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토론토 증권시장 투자가들이 캐나다・미국 다음으로 가장 매력적인 광물투자 대상국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한국의 멕시코 광업투자가 미약한 수준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양한 광물 종류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이 멕시코 광업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의 원자재 수급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법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멕시코원자재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멕시코는 정유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아직까지 멕시코에서는 정유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역할이 확대될 공간이 크다. 따라서 PEMEX의 관련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자원개발사업은 투자금액규모도 막대하고, 투자 후 이익을 창출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진오,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투자법을 중심으로-”,「최신외국법제정보」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특집호, 2012.

멕시코 광업협회,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 “2009년 멕시코 광업현황”,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2010~2025년 멕시코 석유시장 전망보고서」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멕시코에너지부,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역),「2010~2025년 멕시코 천연가스시장 전망보고서」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10.

문남권,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의 발전과 구성”, 중남미연구, 제21권, 2002.

문병기/장민주,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멕시코의 중요성과 유망 진출분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

문준조,「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 중국・필리핀・멕시코・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안성희, “멕시코 투자 환경과 자원시장 현황”,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8.

이민룡, “자원수급의 지정학과 한국의 자원외교”, 정세와 정책, 2008년 3월호, 2008.

이준표, “멕시코의 투자관련 법제 개관 -회사법을 중심으로”,「최신 외국법제정보」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특집호, 2012.

외교통상부・에너지경제연구원(편),「에너지・자원개발의 이해」, 에너지 협력외교 자료집, 2008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편), “2008년 광업생산 현황보고서”,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2008.

외교통상부 중남미지역협력과, “중남미 자원현황”, 외교통상부 2008.

외교통상부 사이버사무국, “중남미 통계자료”, 외교통상부, 2012.

하상섭, “한・멕시코 일반투자 현황과 멕시코 투자법의 발전과 한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8.

황정한, “멕시코 광업, 외국인 투자 활발”, KOTRA, 경제/산업동향, 2007.5.30일자.

허철호, “멕시코 중북부지역의 광물자원”, 자원환경지질, 제42권 제1호, 2009.

KOTRA(편),「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서울: KOTRA, 2008.

<외국문헌>

British Petroleum,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British Petroleum, 2011.

Metal Economic Group, *World Exploration Trends 2010*, Metal Economic Group, 2010.

Rodrigo Sanchez-Mejorada V., “MINING LAW IN MEXICO”,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Vol. 9, No. 1, 2000.

U.S. Department/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USGS, 2011.

<웹사이트>

멕시코 하원, http://www3.diputados.gob.mx/

멕시코 상원, http://www.senado.gob.mx/

멕시코 법무부, http://www.pgr.gob.mx/

주멕시코대사관, http://mex.mofat.go.kr/korean/am/mex/main/index.jsp

중남미자원협력인프라센터, http://energia.mof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British Petroleum, www.bp.com

USGS, http://minerals.usgs.gov/